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Enactment of Investigation Procedure Act

승재현 · 장준희 · 국수호 · 신장욱
이창현 · 조성제 · 최영락

KICJ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승 재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공동연구자

장 준 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장검사

국 수 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신 장 옥 미국(워싱턴D.C, 뉴욕주, 뉴저지주) 변호사

이 창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성 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 영 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간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절차가 불명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수사에 관련된 사람은 ‘피해자’ 및 ‘피의자’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선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불편부당 없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자신의 혐의를 명확하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수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풀어주는 것도 수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경찰청 예규, 법규명령(행정안부령, 대통령령)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되었습니다.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다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 주길 원합니다. 피의자측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규정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은 검찰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은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중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하나의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국민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사절차법(안)이

ii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절차법(안)의 제정에 대해 여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대륙법 전통을 계수하는 대한민국 형사법체제에선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작용'으로 '행정작용'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절차만 규정하는 법령제정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사절차의 모호성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급하게 서두르다 나온 결과이지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기 보단 수사준칙 등 대통령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형사소송법 규정은 법원의 강제수사 규정들이 수사절차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고, 심지어 법률전문가 조차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절차법(안)을 만들어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절차를 이해할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절차법(안)은 수사의 재량권 확보가 아니라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사절차법(안)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법무부 형사법제과 윤원기 과장님, 대검찰청 김종현 형사정책단장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국수호 경정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현 교수님,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학과 조성제 교수님, 김앤장 최영락 변호사님, 미국 워싱턴 D.C 신장욱 변호사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승재현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승재현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1. 의의 9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승재현·장준희

대한민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15

제1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17

1. 개요 17

2.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17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 19

제2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20

1. 2019년 4월 26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6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27

4. 「형사소송법」 대안에 대한 본 의회 수정 내용 29

제3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 논의	32
1.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내용	32
2.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34
3.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36
4.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38

제3장 승재현

우리나라 수사 절차 관련 법·법규명령·예규

제1절 수사 前 단계로서의 내사	43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43
제2절 수사 절차 관련 예규·훈령	47
1. 「범죄수사규칙」(훈령)	47
제3절 수사 절차 관련 법규 명령	64
1. 「경찰 수사 규칙」(행정안전부령)	65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82

제4장 신장욱

영·미의 수사절차법

제1절 영·미 수사절차법	107
1. 영미 수사절차법 개요	107
제2절 영·미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110
1. 영국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110
2. 미국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114
제3절 영·미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118
1. 영국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118
2. 미국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122

제4절 영·미의 체포 절차 125

1. 영국의 체포 절차 125
2. 미국의 체포 절차 129

제5절 영·미의 구금 절차 131

1. 영국의 구금 절차 131
2. 미국의 구금 절차 134

제6절 영·미 형사절차법에 대한 소결 136

제5장 승재현·이창현·조성제·최영락·국수호

수사절차법 141

제1절 수사절차법의 이론적 검토 143

1. 수사의 기본원칙 143
2. 수사기관 및 양 기관의 관계 144
3. 수사의 상당성 148
4. 수사의 단서 150
5. 수사 153
6. 피해자 보호 조치 154

제2절 수사절차법(초안) : 단계 1 156

1. 수사절차법 초안을 미리 만든 이유 156
2. 수사절차법 초안 157

제3절 수사절차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8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208
2.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의 견해 226
3. 최영락 변호사의 견해 233
4. 경찰청 수사연구관의 국수호 경정 의견 237

제6장 승재현

결론 249

 제1절 수사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251

 1.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 251

 2.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결 255

 제2절 수사절차법(안) 도출 : 2단계 256

참고문헌 313

Abstract 315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 수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해 영미법계를 따르지 않고 대륙법계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권한은 사법작용으로 보아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현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관련된 강제처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를 사법작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자칫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엄격한 적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수사를 행정작용으로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수사절차는 기소·공판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는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므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모습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수사절차를 두고 있고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작용으로서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분산된 수사절차 규정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진행된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초래되고 있는 국민의 불편은 수사 절차의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2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위해 성급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를 분리할 만큼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에서 산재되고 있는 여러 수사관련 규정들은 각 기관의 독자적인 존재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수사절차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이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행법으로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형사소송법에서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처분을 수사과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단행법으로서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 중 수사절차에서 관련 법원 강제처분을 준용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의 특수성을 보장하되 강제수사에 대하여 공판단계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준용하는 것은 대륙법계를 계수하고 있는 입장에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다수의 준용규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지 않아 수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수사와 관련된 조문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경찰의 재량권이 현재 보다 넓어져야 하며, 공공의 안녕 보장을 위해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및 미국 같은 경우, 평화로운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통제를 기본으로 범죄예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수사절차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는 미국 또는 영국의 형사법 기준처럼¹⁾ 명확히 설명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볼 때 현행법 또는 증거가 명확한 피의자가 아닌 이상 임의동행(피의자가 거부시)도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흉기 소지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순조로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미국 같은 경우, 경관의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유²⁾만 있다면 정지, 질문, 수색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장물 및 금제품의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한국 경찰관보다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혐의가 상당한 이유³⁾를 근거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

1)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인 의심) 혹은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해당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명확하다.
2) 합리적인 의심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이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정지 및 수색이행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각 사건의 정황사실을 보며 판단한다.

될 시, 경관은 해당 대상자를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하는 수사절차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섯째, 수사절차법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관련 증거법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⁴⁾ 또한 수사절차 관련 규정이 법원의 대인적 혹은 대물적 강제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⁵⁾ 이러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⁶⁾ 검사와「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경찰이 수사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검찰은 그 다음에 공소유지를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⁷⁾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⁸⁾을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이러한 요구에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불송치 통보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¹¹⁾ 이 경우 사법경찰관

3)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경찰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과 전체적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 체포의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합할 수 있다

4) 김기현·김면기·강성용, 수사단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7면.

5)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6)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7) 「형사소송법」 제197조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9)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10)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

11)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1항

4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뿐 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로운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곱째, 경찰과 검사의 수사권 분장의 불명확성에 기인해 수사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앞서 말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⁴⁾ 문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다시 경찰로 내려가게 되어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검찰에 물어보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점에서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보다 투명하게 수사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를 행정작용으로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초래되고 있는 국민의 불편은 수사 절차의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위해 성급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를 분리할 만큼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작용으로서 재판을 위한 준비할

12)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2항

1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1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15)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검·경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체가 마련되었다.

등이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상정이 불가능한 점을 논거로 수사절차법 제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 역시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기소 혹은 불기소로 결과가 나왔을 때 향후 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절차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수사절차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제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절차법을 2단계에 걸쳐 만들어 보았다. 먼저 영국의 PACE법,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훈령, 법규명령, 법을 찾았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범죄수사규칙」, 「경찰 수사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에 나온 범조항을 하나하나 검토 했다.(띄어쓰기 봐주세요) 지루하고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연구 과정이었다. 각 법령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만들어진 수사준칙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살펴 수사절차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사실 한명의 연구진이 아무리 잘 다듬어서 만든 법률 초안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부족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연구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에 기대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연구방법은 외국의 입법례, 국내 입법례를 모으고 난 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결론에서 한 번 법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제정법의 탄생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수사절차법(안)을 내어 놓는다는 점에서 2단계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하지만 1년의 과정에서 제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¹⁶⁾ 본 연구 계획에는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국회 보좌관들과 만나 국회 공청회 개최를 고민했다. 이 또한 핑계겠지만 국정감사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실상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법안을 기초로 더 많은

16) 연구자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을 3개월 가 있어서 시간이 더 부족했다.

6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연구를 통해 반드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쪼록 이번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수사절차법(안)이 향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수사기관의 재량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 1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론

승 재 현

제1절 | 연구의 목적

1. 의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관련 증거법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⁷⁾ 또한 수사절차 관련 규정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인적 혹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¹⁸⁾ 이러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¹⁹⁾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경찰이 수사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검찰은 그 다음에 공소유지를 필요한 부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²⁰⁾하거나 불송치 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²¹⁾을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여기에 더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17) 김기현·김면기·강성용, 수사단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7면

18)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19)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20) 「형사소송법」 제197조

2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0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²⁾

이러한 요구에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³⁾

불송치 통보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²⁴⁾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여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있다.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⁷⁾

앞서 말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⁸⁾ 문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다시 경찰로 내려가게 되어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22)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23)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

24)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1항

25)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2항

2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2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있는지 피해자가 검찰에 물어보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²⁹⁾

여기에 더해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수사 결과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³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그 외 관련 령과 훈령 등에 수사 절차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바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장은 피의자는 중복적으로 수사에 노출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공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법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9)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검·경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체가 마련되었다.

3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2. 연구의 목적

수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인신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³²⁾라고 규정하면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³⁾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³⁴⁾고 규정해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를 헌법적 가치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절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수사절차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절차의 독립된 법은 존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규정 내에서 수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이외에 법원의 재판 절차가 중심이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사를 법원 강제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를 계수함. 프랑스의 경우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심판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는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결단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역시 법원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이외에 수사절차는 대통령령에 혹은 각 수사기관의 예규 또는 훈령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사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32) 헌법 제12조 제1항

33) 헌법 제12조 제3항

34) 헌법 제12조 제7항

자신이 현재 받는 수사가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사절차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볼 수 있어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훈령과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훈령 혹은 예규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은 하나의 법규명령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별 법령과 규칙 그리고 예규 및 훈령에 산재되어 있는 수사관련 규정을 단행 법률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피의자의 중복 수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고, 고소인의 권리가 막혀 수사의 공백이 만들어 내는 정의의 공백을 막아야 하며, 개별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절차법을 만들어 사건관계인이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수사절차에 위법 또는 부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다기한 법률과 대통령령을 찾고, 여기에 더해 개별 예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찾고, 쉽게 확인하고, 수사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의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용의자 단계에서 공소제기까지 수사와 관련된 규정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예규 검토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 사건사무규칙(부령), 경찰수사규칙(부령), 범죄수사규칙(훈령),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등을 세밀히 살펴 해당 관련 법령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된 내용을 추려 수사절차법의 모범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단행 수사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1984(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4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해당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법조문 중 현재 본 연구자가 만들고자 하는 수사절차법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 실질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³⁵⁾

이후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연구 기간 중인 9월 중에 완성하여 그 수사절차법에 대해 관련 부처인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그리고 학계(경찰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에게 해당 수사절차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거쳐 해당 수사절차법을 제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을 조기에 만들어 국회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하겠다.

35) 여기서 영국의 입법례는 수사절차법 제정에 있어서 목차를 설계할 때 그리고 개별법령을 제정할 때 참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사와 관련된 절차는 선진국의 수사절차와 견주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대한민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승재현 · 장준희

제2장

대한민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제1절 |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1. 개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분산, 실제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을 어느 선까지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모아졌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찰은 중요 6대 수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륙법계 법통을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 법률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장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검·경 수사권은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바탕으로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정을 근거

18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만들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 2020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다.³⁶⁾

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국정과제 13으로 하고 있었다.³⁷⁾ 검·경 수사권,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과제의 목표로 하였고,³⁸⁾ 2017년까지 경찰권의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실행을 그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³⁹⁾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해당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검·경의 합의를 요청하였다.⁴⁰⁾ 이후 청와대 조국 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모여 11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통해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마련되었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

1)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호관계를 설정하였다.⁴¹⁾

3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최종 접속일 2022. 10. 1.)

3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과제목표 13 참고

3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과제목표 13 과제 목표 참고

3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과제목표 13 주요 내용 참고

40)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 참고

2)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였다.⁴²⁾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과 동시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하도록 하였다.⁴³⁾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

국회는 정부의 합의안에 발맞추어 사개특위 검·경 개혁 소위원회를 만들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9년 4월 22일 당시 여·야 4당은 먼저 검사작성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2020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을 받은 '수사준칙(대통령령)'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을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41)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도자료 2면 참고

42)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도자료 2면 참고

43)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도자료 2면 참고

제2절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1. 2019년 4월 26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⁴⁾

가. 제안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⁴⁵⁾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⁴⁶⁾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⁴⁷⁾

나. 주요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⁴⁸⁾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44)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백혜련·송기현 박범계·이종걸·박주민 이상민·안호영·표창원 김종민·임재훈 의원)

45)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 제안이유 참고

4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 제안이유 참고

47)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 제안이유 참고

48)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195조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하였다.⁴⁹⁾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도록 하였다.⁵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¹⁾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⁵²⁾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도록 하였다.⁵³⁾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⁵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⁵⁵⁾

49)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197조

50)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197조의2

5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197조의3

52)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221조의 5

5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245조의 5

54)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245조의 6, 제245조의 7

다. 신·구 법령 대조표⁵⁶⁾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p> <p>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p> <p>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p>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p> <p><신 설></p>	<p>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p> <p>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p> <p>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p> <p>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55)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221조의 8

5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0, 신·구 대조표 참고

현행	개정안
<p>〈신 설〉</p>	<p>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p>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p> <p>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p> <p>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p>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신 설〉</p>	<p>제197조의4(수사의 경합)</p> <p>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p>

24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p> <p>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p> <p>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p> <p>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 제245조의5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삭 제〉</p>
<p>③ ~ ⑥(생략)</p>	<p>③ ~ ⑥(현행과 같음)</p>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⁵⁷⁾

가. 수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한다.⁵⁸⁾

나. 수정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송부 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도록 하여 검사로 하여금 더욱 충실히 제2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⁵⁹⁾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⁶⁰⁾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때로부터 1년 내의 시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하였다.⁶¹⁾

다. 수정안 조문 대조표⁶²⁾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신 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 -----. 1. (개정안과 같음).

5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국회의원 155명, 명단은 생략)

58)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국회의원 155명, 명단은 생략), 수정이유 참고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조의5 제1항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5조의8 제2항

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62)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조문 참고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신 설〉</p>	<p>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하여 제245조의5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p>	<p>2. ----- ----- ----- -----90일----- -----.</p> <p>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재수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p>

3.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⁶³⁾

2021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가. 「형사소송법」 대안의 제안 경위

2021년 2월 1일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 22일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⁶⁴⁾

또한 2021년 8월 12일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1월 16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고, 역시 2022년 4월 15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2022년 4월 18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다.⁶⁵⁾

이어 2022년 4월 18일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19일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20일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25일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⁶⁾

2022년 4월 26일에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2. 4. 26.)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26일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였다.⁶⁷⁾

2022년 4월 27일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⁶⁸⁾

나. 「형사소송법」 대안의 주요내용

1) 검사의 송치 사건의 수사범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하였다.⁶⁹⁾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407,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407,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407,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407,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5407,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2) 별건 수사 및 자백 금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다.⁷⁰⁾

다. 신·구 조문 대조표⁷¹⁾

현 행	개 정 안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신 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5제1호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생략) (신 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형사소송법」 대안에 대한 본 의회 수정 내용⁷²⁾

가. 주요 수정 내용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96조 제2항 신설

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98조 제4항 신설

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 대조표 참고

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아울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수정내용으로 하였다.⁷³⁾

나. 본 의회 통과 「형사소송법」 내용

1) 검사의 수사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⁷⁴⁾

2) 고발인의 이의신청 금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⁷⁵⁾

다. 신·구 조문 대조표⁷⁶⁾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유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신 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5 제1호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제198조의2제2항----- ----- -----

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정주요내용 참고
 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고
 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고
 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 조문 대조표 참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생략)</p> <p>〈신 설〉</p> <p>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p> <p>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p> <p>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p> <p>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개정안과 같음)</p> <p>④(개정안과 같음)</p> <p>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① -----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p> <p>②(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제3절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 논의

1.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내용⁷⁷⁾

가. 제안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⁷⁸⁾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⁷⁹⁾

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상의 검찰청 직원 조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⁸⁰⁾

나. 주요 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⁸¹⁾

77)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11.12.(백혜련·서삼석·송옥주박홍근·송갑석·송기헌제윤경·김영진·윤후덕표창원·신창현·강병원박범계·박영선·박주민이종걸·윤준호·이춘석위성곤 의원: 19인)

78)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고

79)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고

80)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고

81)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⁸²⁾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하였다.⁸³⁾

다. 신·구 조문 대비표⁸⁴⁾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단서 신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신 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신 설>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신 설>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2.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3. ~ 6.(생 략)	3. ~ 6.(현행과 같음)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생 략)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 ----- ----- ----- ----- ----- ----- -----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1. ----- -----: -----제245조의9제2항----- -----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	2. -----

82)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4조 제2항
 83)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2항
 84)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대조표 참고

현 행	개 정 안
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 -----제245조의9제3항 -----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 -----.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1. -----: --- ---제245조의9제2항-----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2. -----: ----- 제245조의9제3항-----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생략)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 ----- ----- ----- ----- ----- -----.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1. -----: --- ---제245조의9제2항-----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2. -----: ----- -----제245조의9제3항----- -----

2.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⁸⁵⁾

가.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 내용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한다.⁸⁶⁾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85)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155인 생략), 2019. 12. 24

86)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참고

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⁸⁷⁾

또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수사 및 공판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수정하였다.⁸⁸⁾

다. 수정안 조문 대조표⁸⁹⁾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단서 신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 ----- -----. 1. ----- ----- ----- ----- -----.
<신 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신 설>	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신 설>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 등의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2.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2. -----특별사법경찰관리 -----
3. ~ 6.(생략)	3. ~ 6.(현행과 같음)	3. ~ 6.(개정안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87)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88)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89)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참고

3.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⁹⁰⁾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2021년 2월 22일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3월 16일에 법사위에 상정되었다.⁹¹⁾

또한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 22일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⁹²⁾

해를 바꾸어 2022년 4월 15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4월 18일에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다.⁹³⁾

이에 국회는 2022년 4월 18일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19일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20일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2년 4월 25일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26일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⁹⁴⁾

2022년 4월 26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되었고, 2022년 4월 27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⁹⁵⁾

90)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5408, 2022. 4. 법제사법위원장
91)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92)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93)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94)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95)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대안의 제안 경위 참고

나. 「검찰청법」 대안의 주요내용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하였다.⁹⁶⁾

2)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⁷⁾

3)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⁹⁸⁾

4) 국회의 보고 의무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5) 선거범죄에 대한 경과 규정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찰청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⁹⁹⁾

96)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97)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2항 신설

98)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제4조 제3항 신설

99)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제24조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2. ~ 6.(생략) <신설>	2. ~ 6.(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제245조의5제1호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2. ~ 6.(현행과 같음) <삭제>
<신설>	③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②(생략)	④(현행 제2항과 같음) 부칙	③(개정안 제4항과 같음) 부칙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를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를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3 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우리나라 수사 절차 관련 법·법규명령·예규

승 재 현

제3장

우리나라 수사 절차 관련 법·법규명령·예규

제1절 | 수사 前 단계로서의 내사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가. 의의

1) 전면 개정 이유

본 규칙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시행되어왔던「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2021년 8월 30일 전면 개정한 훈령이다. 전면 개정 이유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종전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다.¹⁰³⁾

2) 목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103)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에 대한 개정 이유 참고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⁴⁾

이에 대해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⁵⁾

이러한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입건’하고,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입건전조사 종결을,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건전조사 중지를 한다.¹⁰⁶⁾ 그리고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혐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송을 하여야 한다.¹⁰⁷⁾

다만 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단순한 품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람 후 종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⁰⁸⁾

나. 입건 전 조사의 기본 원칙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¹⁰⁹⁾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1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105) 「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전 조사) 제1항 참고

106) 「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전 조사) 제1항 참고

107) 「경찰수사규칙」제19조(입건전 조사) 제2항 참고

108)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1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전 조사) 제2항 5호 참고

109)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2조 참고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¹¹⁰⁾

‘입건 전 조사’에서도 예외적으로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규정상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내사 단계에서 통신조회, 금융조회, 압수·수색·감정·검정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 국민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훈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입건 전 조사’가 ‘보안 행정’ 작용으로서 ‘조사’라고 본다면 입건 전 조사에 대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행정조사는 조사목적달 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¹⁾ 다만 행정조사시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 거부할 경우에 제재할 근거법령 및 조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²⁾ 즉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 입건 전 조사의 종류와 절차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신고사건,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제출 혹은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첩보사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기타조사사건이 있다.¹¹³⁾

입건 전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2조 제3항 참고

111)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참고

11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참고

113)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3조 참고

는 이를 수리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여야 한다.¹¹⁴⁾ 다만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¹¹⁵⁾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입건 전 조사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¹¹⁶⁾ 경찰관은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¹¹⁷⁾

라. 입건 전 조사의 진행

입건 전 조사의 보고·지휘, 출석요구, 진정·신고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 작성, 압수·수색·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를 ‘조사’로 본다.¹¹⁸⁾

여기서 살펴 볼 대목은 ‘입건 전 조사’로 명명을 하면서도 사실상 ‘수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입건 전 조사’ 대국민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수사절차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¹¹⁹⁾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114)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4조 참고

115)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5조 제1항 참고

116)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5조 제2항 참고

117)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5조 제3항 참고

118)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7조 제2항 참고

119)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7조 제2항 참고

경우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²⁰⁾

마. 입건 전 조사의 종결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죤인지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¹²¹⁾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규칙」상의 입건 전 조사 종결, 입건 전 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 등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하여야 한다.¹²²⁾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¹²³⁾

제2절 | 수사 절차 관련 예규·훈령

본 절에서는 수사 절차 관련 범죤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절차 규정은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의 4가지 부분이다. 관련 범죤수사규칙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훈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죤수사규칙」(훈령)

가. 의의

경찰공무원이 범죤을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120)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7조 제3항 참고

12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8조 참고

122)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9조 참고

123)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호) 제8조, 제9조 참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¹²⁴⁾

나. 수사의 기본 원칙

1) 사건 관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하며,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¹²⁵⁾

2) 제척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에는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¹²⁶⁾

3) 기피

(1) 기피원인과 신청권자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¹²⁷⁾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¹²⁸⁾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¹²⁹⁾

12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조 및 제2조 참고

12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호 참고 상세한 사건 관할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참고

12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조

12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9조

12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9조 단서

12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9조 제2항 참고

(2) 기피 신청방법과 대상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³⁰⁾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¹³¹⁾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¹³²⁾

(3) 기피 신청의 처리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징정·탄원·신고 사건이 아닌 경우,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¹³³⁾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부서의 장이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³⁴⁾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¹³⁵⁾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³⁶⁾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¹³⁷⁾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¹³⁸⁾ 감사부서의 장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

13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0조 참고

13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0조 단서 참고

13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0조 제2항 참고

13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참고

13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2항 참고

13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3항 참고

13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4항 참고

13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5항 참고

사실 또는 공정수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³⁹⁾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¹⁴⁰⁾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¹⁴¹⁾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나,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⁴²⁾

경찰관의 기피신청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현재의 공정수사위원회의 구성은 5명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피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정수사위원회가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 상에서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수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경찰관서의 상급관서에서 주관하고 여기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¹⁴³⁾이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이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¹⁴⁴⁾

13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6항 참고

13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7항 참고

14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8항 참고

14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8항 참고

14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조 제9항 참고

14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참고

14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조 참고

다. 수사지휘

1) 수사지휘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¹⁴⁵⁾ 보고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 또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지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¹⁴⁶⁾

2) 사건의 수사지휘와 보고

경찰관서장과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¹⁴⁷⁾

라.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¹⁴⁸⁾

수사는 필요성이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는 수사의 상당성에 비추어 진행하면 될 것이다. 수사의 시기를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4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23조 제2항 참고

14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23조, 제24조 참고

14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22조 참고

14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4조 참고

2)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함)」 제5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¹⁴⁹⁾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¹⁵⁰⁾

3)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¹⁵¹⁾ 다만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¹⁵²⁾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¹⁵³⁾

4) 고소·고발 접수·처리 및 반려

(1) 절차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¹⁵⁴⁾ 다만,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¹⁵⁵⁾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고발이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149)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15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6조 참고

15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7조 제1항 참고

15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7조 제2항 참고

15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7조 제3항 참고

15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9조 참고

15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9조 단서 참고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인 경우,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¹⁵⁶⁾

(2) 주의사항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¹⁵⁷⁾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¹⁵⁸⁾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¹⁵⁹⁾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¹⁶⁰⁾

5)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증거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으나,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¹⁶¹⁾

15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49조~제50조 참고

15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53조 제1항 참고

15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53조 제2항 참고

15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53조 제3항 참고

16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53조 제4항 참고

마. 임의수사

임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절차적 규정으로 내부 훈령으로 규정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규정도 있다. 다만 법규명령인 「경찰수사규칙」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상세한 규정들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작아질 수 있지만 훈령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규 명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정을 모아 하나의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음에서는 법규 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석요구 및 조사 장소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¹⁶²⁾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⁶³⁾ 경찰관은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¹⁶⁴⁾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¹⁶⁵⁾

2) 조사 절차에 있어서 임의성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⁶⁶⁾ 또한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방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16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54조 참고

16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1조 참고

16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2조 제1항 참고

16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2조 제2항 참고

16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2조 제3항 참고

16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3조 제1항 참고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⁶⁷⁾

3) 진술거부권 및 조사 절차의 적법성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¹⁶⁸⁾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¹⁶⁹⁾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¹⁷⁰⁾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¹⁷¹⁾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¹⁷²⁾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⁷³⁾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⁷⁴⁾

4) 피의자 조사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¹⁷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

16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3조 제2항 참고

16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4조 참고

16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6조 참고

17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7조 참고

17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8조 참고

17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9조 제1항 참고

17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69조 제2항 참고

17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0조 참고

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¹⁷⁶⁾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⁷⁷⁾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¹⁷⁸⁾

조사과정에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와 사용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¹⁷⁹⁾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

175) 피의자 신문조서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혼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0조 참고).

17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1조 참고

17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3조 참고

17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3조 제2항 참고

17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5조 참고

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¹⁸⁰⁾

5)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피해상황,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해회복의 여부, 처벌희망의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유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¹⁸¹⁾

바. 변호인 접견 및 참여

본 변호인 접견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 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한 바 본 부분도 법규명령에 규정해 법규 명령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변호인 참여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¹⁸²⁾

2) 변호인 접견

변호인 등의 접견은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¹⁸³⁾ 별도의 지정된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절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¹⁸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¹⁸⁵⁾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18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5조~제76조 참고

18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2조 참고

18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78조 제2항 참고

18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1조 제1항 참고

18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1조 제2항 참고

18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1조 제3항 참고

관찰할 수 있다. 경찰관은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⁸⁶⁾

3) 접견 시간 및 횟수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¹⁸⁷⁾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¹⁸⁸⁾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의 제한이 없다.¹⁸⁹⁾

사. 영상녹화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¹⁹⁰⁾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¹⁹¹⁾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¹⁹²⁾

아. 체포·구속

강제수사 중 대인적 강제처분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해당한다. 또 이 부분은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다. 강제수사와 영장과 관련된 요건 혹은 절차는 훈령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훈령에는 최소한도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법규 명령으로 올리고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8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1조 참고

187)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9조 제2항

188)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9조 제3항

18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5조 제1항 참고

19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6조

19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85조~86조 참고

1) 긴급체포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¹⁹³⁾

2)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⁹⁴⁾

3) 체포·구속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⁹⁵⁾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¹⁹⁶⁾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⁹⁷⁾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¹⁹⁸⁾

4) 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¹⁹⁹⁾

19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5조 제1항 참고

19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19조 참고

19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5조 제1항 참고

19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5조 제2항 참고

19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5조 제3항 참고

19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5조 제4항 참고

19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29조 참고

5) 변호인 선임의뢰 통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²⁰⁰⁾

6) 피의자와의 접견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²⁰¹⁾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²⁰²⁾

7) 체포·구속된 피의자 처우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공평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급식, 위생,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²⁰³⁾

8) 피의자 도주 등

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다.²⁰⁴⁾

자. 압수·수색·검증

강제수사 중 대물적 강제처분 역시 '강제수사법정주의'와 영장과 관련이 있다. 강제

20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0조 참고

20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1조 제1항 참고

20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1조 제2항 참고

20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2조 참고

20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3조 참고

수사와 영장과 관련된 요건 혹은 절차는 훈령에 규정하는 것 또한 부적절해 보인다. 훈령에는 최소한도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법규명령으로 올리고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자료의 제출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²⁰⁵⁾ 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²⁰⁶⁾

2)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²⁰⁷⁾

3) 제3자의 참여

경찰관은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 혹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²⁰⁸⁾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²⁰⁹⁾

4) 압수·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20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5조 제1항 참고

20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5조 제2항 참고

20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6조 참고

20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7조 제1항 참고

20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7조 제2항 참고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²¹⁰⁾

5) 수색조서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²¹¹⁾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²¹²⁾

6)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²¹³⁾

7)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²¹⁴⁾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²¹⁵⁾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²¹⁶⁾

21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38조 참고

21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0조 제1항 참고

21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0조 제2항 참고

21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1조 참고

21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2조 제1항 참고

21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2조 제2항 참고

21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2조 제3항 참고

8) 유류물의 압수

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등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²¹⁷⁾ 이 경우 압수조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²¹⁸⁾

9)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²¹⁹⁾ 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²²⁰⁾

10) 폐기·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두고,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따라 명백히 해야 하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질과 상태, 가격 등을 감정해 두어야 한다.²²¹⁾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두어야 한다.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해야 한다.²²²⁾

217)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3조 제1항 참고

21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3조 제2항 참고

219)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4조 제1항 참고

22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4조 제2항 참고

22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7조 제1항 참고

22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7조 제2항 참고

11)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²²³⁾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²²⁴⁾

12) 시체 검증 등

경찰관은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²²⁵⁾

13)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경찰은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²²⁶⁾

제3절 | 수사 절차 관련 법규 명령

제2절에서는 매우 실무적인 절차 규정인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본 제3절에서는 수사 절차 관련 법규명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절차법

22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9조 제1항 참고

22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9조 제2항 참고

225)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40조 참고

22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35호) 제150조 참고

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절차 규정은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의 4가지 부분이다. 이번 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찰 수사 규칙」(행정안전부령)

가. 의의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²²⁷⁾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²²⁸⁾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²²⁹⁾

나. 협력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이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롯하게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를 수사절차법 가장 앞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27) 「경찰 수사 규칙」 제1조 참고

228) 「경찰 수사 규칙」 제2조 제1항 참고

229) 「경찰 수사 규칙」 제2조 제2항 참고

1) 협력의 방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²³⁰⁾에 따라 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의 요청·요구·신청 등(이하 “협력 요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²³¹⁾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협력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²³²⁾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사 현장에서 협력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등 제2항의 방식으로 협력 요청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협력 요청 등을 할 수 있다.²³³⁾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협력 요청 등을 할 수 있다.²³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로부터 기간이 정해진 협력 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²³⁵⁾

2) 중요사건 협력절차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요청서²³⁶⁾,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경우에도 의견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²³⁷⁾

23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31) 「경찰 수사 규칙」 제3조 제1항 참고
 232) 「경찰 수사 규칙」 제3조 제2항 참고
 233) 「경찰 수사 규칙」 제3조 제3항 참고
 234) 「경찰 수사 규칙」 제3조 제4항 참고
 235) 「경찰 수사 규칙」 제3조 제5항 참고
 236) 「경찰 수사 규칙」 제4조 제1항 참고
 237) 「경찰 수사 규칙」 제4조 제2항 참고

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²³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²³⁹⁾

4)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²⁴⁰⁾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시찰조회 요청 사유 및 직무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²⁴¹⁾

5) 검사와의 협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²⁴²⁾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²⁴³⁾ 이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²⁴⁴⁾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⁴⁵⁾

중요한 것은 소속경찰관서장의 협의 요청에 검사장이 응하지 않아 계속 협의가

238) 「경찰 수사 규칙」 제5조 제1항 참고

239) 「경찰 수사 규칙」 제5조 제2항 참고

240) 「경찰 수사 규칙」 제6조 제1항 참고

241) 「경찰 수사 규칙」 제6조 제2항 참고

242) 「경찰 수사 규칙」 제7조 제1항 참고

243) 「경찰 수사 규칙」 제7조 제2항 참고

244) 「경찰 수사 규칙」 제7조 제3항 참고

245) 「경찰 수사 규칙」 제7조 제4항 참고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 만일 수사기관의 협조가 되지 않아 범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의 인멸, 주요 참고인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한 정의의 공백은 수사기관의 존립의 문제와 직결 될 수 있다.

6)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호송,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²⁴⁶⁾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²⁴⁷⁾ 이 경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²⁴⁸⁾

다. 수사

1)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²⁴⁹⁾ 이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거나,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²⁵⁰⁾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요구·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²⁵¹⁾

246) 「경찰 수사 규칙」 제8조 제1항 참고

247) 「경찰 수사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참고

248) 「경찰 수사 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249) 「경찰 수사 규칙」 제9조 제1항 참고

250) 「경찰 수사 규칙」 제9조 제2항 참고

2)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²⁵²⁾ 이 경우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²⁵³⁾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²⁵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²⁵⁵⁾

3)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²⁵⁶⁾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²⁵⁷⁾

251) 「경찰 수사 규칙」 제9조 제3항 참고

252)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제1항 참고

253)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제2항 참고

254)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제3항 참고

255)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제4항 참고

256) 「경찰 수사 규칙」 제12조 제1항 참고

4)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²⁵⁸⁾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²⁵⁹⁾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²⁶⁰⁾

5) 사건 관계인의 경우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역시 피의자 변호인 참여 및 참여 제한에 따라 할 수 있다.²⁶¹⁾

6) 심사관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²⁶²⁾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²⁶³⁾

라.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사법경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257) 「경찰 수사 규칙」 제12조 제2항 참고
258) 「경찰 수사 규칙」 제13조 제1항 참고
259) 「경찰 수사 규칙」 제13조 제2항 참고
260) 「경찰 수사 규칙」 제13조 제3항 참고
261) 「경찰 수사 규칙」 제14조 참고
262) 「경찰 수사 규칙」 제17조 제1항 참고
263) 「경찰 수사 규칙」 제17조 제2항 참고

개시한다.²⁶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²⁶⁵⁾

2) 입건 전 조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²⁶⁶⁾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은 입건²⁶⁷⁾, 입건전조사 종결²⁶⁸⁾, 입건전조사 중지²⁶⁹⁾, 이송²⁷⁰⁾, 공람 후 종결²⁷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입건 전 조사’에서 즉 내사 단계에서 통신조회, 금융조회, 압수·수색·감정·검정 등은 가능하다. ‘입건 전 조사’가 ‘보안 행정’ 작용으로서 ‘조사’라고 본다면 입건 전 조사에 대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⁷²⁾ 다만 행정조사시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 거부할 경우에 제재할 근거법령 및 조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⁷³⁾ 즉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64) 「경찰 수사 규칙」 제18조 제1항 참고

265) 「경찰 수사 규칙」 제18조 제2항 참고

266)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1항 참고

267)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함

268) 제10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269)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270)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271)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를 의미함

27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참고

273)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참고

3) 불입건 결정 통지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 제4항²⁷⁴⁾에 따라 피혐의자(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한·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나,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²⁷⁵⁾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²⁷⁶⁾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²⁷⁷⁾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²⁷⁸⁾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²⁷⁹⁾

4) 고소·고발의 수리

사법경찰관리는 진정한·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한다.²⁸⁰⁾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소

274) 수사준칙 제16조 제4호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75)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1항 참고

276)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2항 참고

277)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3항 참고

278)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한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79)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4항 참고

280) 「경찰 수사 규칙」 제21조 제1항 참고

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²⁸¹⁾

5) 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²⁸²⁾ 사법경찰관리는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²⁸³⁾

6) 고소의 대리

사법경찰관리는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²⁸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²⁸⁵⁾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고소의 취소에 있어서도 동일하다.²⁸⁶⁾

7) 고소·고발의 수사 기간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²⁸⁷⁾ 사법경찰관리는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²⁸⁸⁾

8) 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281) 「경찰 수사 규칙」 제21조 제2항 참고

282) 「경찰 수사 규칙」 제22조 제2항 참고

283) 「경찰 수사 규칙」 제22조 제2항 참고

284) 「경찰 수사 규칙」 제23조 제1항 참고

285) 「경찰 수사 규칙」 제23조 제2항 참고

286) 「경찰 수사 규칙」 제23조 제3항 참고

287)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 제1항 참고

288)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 제2항

한다.²⁸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²⁹⁰⁾

9)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또는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²⁹¹⁾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통보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전화·팩스·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²⁹²⁾

10) 변사자의 검시·검증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²⁹³⁾ 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²⁹⁴⁾

11) 검시의 주의 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검시하는 경우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教唆者)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

289) 「경찰 수사 규칙」 제25조 제1항
 290) 「경찰 수사 규칙」 제25조 제2항
 291) 「경찰 수사 규칙」 제26조 제1항
 292) 「경찰 수사 규칙」 제26조 제2항
 293) 「경찰 수사 규칙」 제27조 제1항
 294) 「경찰 수사 규칙」 제27조 제2항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에 주의해야 한다.²⁹⁵⁾

12) 검사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 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²⁹⁶⁾

13) 사체의 인도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²⁹⁷⁾

마. 임의수사

새롭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행안부령인 「경찰 수사 규칙」의 내용은 수사 준칙의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출석요구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에 따른다.²⁹⁸⁾

295) 「경찰 수사 규칙」 제29조 참고

296) 「경찰 수사 규칙」 제30조 참고

297) 「경찰 수사 규칙」 제31조 참고

298) 「경찰 수사 규칙」 제34조 참고

2) 수사상 임의 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²⁹⁹⁾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³⁰⁰⁾

3) 심사조사 제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4호³⁰¹⁾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³⁰²⁾

4) 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제1호³⁰³⁾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³⁰⁴⁾

5) 신뢰관계인 동석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³⁰⁵⁾

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

299)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300) 「경찰 수사 규칙」 제35조 참고

301)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칭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02) 「경찰 수사 규칙」 제36조 참고

30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304) 「경찰 수사 규칙」 제37조 참고

305) 「경찰 수사 규칙」 제38조 제2항 참고

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³⁰⁶⁾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 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³⁰⁷⁾

6) 조서와 진술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³⁰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³⁰⁹⁾

7) 실황조사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³¹⁰⁾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³¹¹⁾

바. 영상녹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³¹²⁾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306) 「경찰 수사 규칙」 제38조 제3항 참고

307) 「경찰 수사 규칙」 제38조 제4항 참고

308) 「경찰 수사 규칙」 제39조 제3항 참고

309) 「경찰 수사 규칙」 제39조 제4항 참고

310) 「경찰 수사 규칙」 제41조 제1항 참고

311) 「경찰 수사 규칙」 제41조 제2항 참고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³¹³⁾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³¹⁴⁾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¹⁵⁾

사. 체포·구속

대인적 강제처분관련 규정도 새롭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행안부령인 「경찰 수사 규칙」의 내용은 수사준칙의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체포 영장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³¹⁶⁾

2) 현행범인 체포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³¹⁷⁾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촉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³¹⁸⁾

312) 「경찰 수사 규칙」 제43조 제1항 참고

313) 「경찰 수사 규칙」 제43조 제1항 단서 참고

314) 「경찰 수사 규칙」 제43조 제2항 참고

315) 「경찰 수사 규칙」 제43조 제3항 참고

316) 「경찰 수사 규칙」 제50조 제1항 참고

317) 「경찰 수사 규칙」 제52조 제1항 참고

3)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³¹⁹⁾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거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³²⁰⁾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³²¹⁾

아. 압수·수색·검증

1)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신청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³²²⁾

2)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³²³⁾

자. 수사의 종결

1) 장기사건 수사종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한다.³²⁴⁾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318) 「경찰 수사 규칙」 제50조 제3항 참고

319) 「경찰 수사 규칙」 제55조 제1항 참고

320) 「경찰 수사 규칙」 제55조 제2항 참고

321) 「경찰 수사 규칙」 제55조 제3항 참고

322) 「경찰 수사 규칙」 제63조 참고

323) 「경찰 수사 규칙」 제66조 제1항 참고

324) 「경찰 수사 규칙」 제95조 제1항 참고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³²⁵⁾

2) 수사 결과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³²⁶⁾ 이러한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³²⁷⁾

3) 수사 중지 결정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³²⁸⁾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 중지로 인한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³²⁹⁾

4) 수사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325) 「경찰 수사 규칙」 제95조 제1항 단서 참고

326) 「경찰 수사 규칙」 제97조 제1항 참고

327) 「경찰 수사 규칙」 제97조 제2항 참고

328) 「경찰 수사 규칙」 제98조 제1항 제1호 참고

329) 「경찰 수사 규칙」 제99조 제1항 제2호 참고

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³³⁰⁾ 이러한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³³¹⁾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을 하면서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 혹은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수용을 한다.³³²⁾

차. 사건의 송치와 보완수사

1) 보완수사요구 결과 통보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³³³⁾

카. 사건의 불송치와 재수사

1)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³³⁴⁾

2) 재수사 결과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³³⁵⁾

330) 「경찰 수사 규칙」 제101조 제1항 참고

331) 「경찰 수사 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332) 「경찰 수사 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333) 「경찰 수사 규칙」 제105조 제1항 참고

334) 「경찰 수사 규칙」 제111조 참고

3)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³³⁶⁾ 사법경찰관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³³⁷⁾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³³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해당 수사준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준칙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책임제’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6월 30일부터 검경협의체 실무위원 협의체가 다음달 7월 15일부터는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해당 협의체와 협의회는 연속회의를 진행하여 수사준칙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다.³³⁹⁾ 현 시점까지 그 협의체와 협의회를 논의가 법안으로 도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사준칙 조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총칙

1) 의의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

335) 「경찰 수사 규칙」 제112조 참고

336) 「경찰 수사 규칙」 제113조 제2항 참고

337) 「경찰 수사 규칙」 제113조 제3항 참고

338) 본 연구에서 각각의 제목이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수사절차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수사준칙에서 법령으로 올리기로 한다.

339) 본 연구자는 해당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다만 해당 관련 회의가 비공개회의라는 점에서 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연구에 담을 수 없었다.

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⁴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³⁴¹⁾

2)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의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들어와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수사절차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다. 향후 수사절차법 제1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³⁴²⁾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³⁴³⁾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³⁴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³⁴⁵⁾

3) 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³⁴⁶⁾

34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참고

34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

34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참고

34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참고

34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참고

34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 참고

34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 참고

4) 형사사건 공개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³⁴⁷⁾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⁴⁸⁾ 다만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³⁴⁹⁾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2년 7월 25일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였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자, 현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의 요건을 현실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³⁵⁰⁾

그 개정 내용으로는 수사 종결 단계에서 ‘공익을 위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³⁵¹⁾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34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참고
 34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참고
 34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참고
 35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밝힌 개정 이유인.

351)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0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개요,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 이하 같다)의 승인이 있거나 피의자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

언론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쟁점 다수·사안 복잡한 중요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⁵²⁾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정해진 서식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였다.³⁵³⁾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의결사항을 각급 검찰청의 장(長) 승인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보지연을 방지하고 공보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³⁵⁴⁾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의 취지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 측의 반론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그 반론을 공개하도록 하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폐지하였다.³⁵⁵⁾

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사항,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2.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352)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보의 방식)

- 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공보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이하 "차장검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장검사 등이 공개하는 내용은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한정한다.

353)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보의 방식)

-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354)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2호 참고

355)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

나. 수사

1)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³⁵⁶⁾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³⁵⁷⁾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³⁵⁸⁾

2)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³⁵⁹⁾

3)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⁶⁰⁾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³⁶¹⁾

만, 본문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공개 후 30일 이내에 반론요청을 한 경우 제2장 제3절의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그 반론내용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의 반론내용은 공개된 반론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35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참고

35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참고

35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참고

35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참고

36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참고

36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참고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³⁶²⁾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³⁶³⁾ 변호인의 참여 및 조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³⁶⁴⁾

5) 변호인의 의견진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³⁶⁵⁾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³⁶⁶⁾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³⁶⁷⁾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³⁶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³⁶⁹⁾

6)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는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는 별개의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도 처벌

36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참고

36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참고

36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참고

36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참고

36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전단 참고

36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참고

36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후단 참고

36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참고

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를 별개의 법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법도 이를 양분해 피의자의 적법절차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별개로 규정하기로 한다.³⁷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³⁷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³⁷²⁾

다.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³⁷³⁾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³⁷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³⁷⁵⁾

370)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2023년 연구과제로 하여 계속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7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참고

37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참고

37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참고

37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참고

37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참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³⁷⁶⁾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³⁷⁷⁾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³⁷⁸⁾

2) 변사자 검시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³⁷⁹⁾ 검사는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³⁸⁰⁾ 사법경찰관은 법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³⁸¹⁾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³⁸²⁾

37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참고

37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6항 참고

37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6항 참고

37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참고

38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참고

38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 참고

38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참고

3) 검사의 사건 이송

검사는 「검찰청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청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³⁸³⁾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³⁸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³⁸⁵⁾ 검사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³⁸⁶⁾

라. 임의수사

1)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에 유의해야 한다.³⁸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³⁸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383)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38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참고

38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참고

38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 참고

38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참고

38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참고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³⁸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³⁹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³⁹¹⁾

이러한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³⁹²⁾

2)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³⁹³⁾

3) 심야조사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³⁹⁴⁾

그러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38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참고

39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4항 참고

39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참고

39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참고

39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참고

39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참고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지만 심야 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³⁹⁵⁾

4) 장시간 조사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³⁹⁶⁾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³⁹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³⁹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으나, 장시간 조사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³⁹⁹⁾

39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참고

39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참고

39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단서 참고

39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참고

39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4항 참고

5) 휴식시간 부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⁴⁰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⁴⁰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⁴⁰²⁾

6) 신뢰관계자 동석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⁴⁰³⁾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⁴⁰⁴⁾

7) 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⁴⁰⁵⁾

40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참고

40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참고

40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 참고

40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참고

4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 참고

40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참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⁴⁰⁶⁾

마. 강제수사

1) 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하나,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상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⁴⁰⁷⁾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⁴⁰⁸⁾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⁴⁰⁹⁾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⁴¹⁰⁾

2)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

40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참고

40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3항 참고

40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4항 참고

40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5항 참고

41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 참고

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⁴¹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⁴¹²⁾

3) 구속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⁴¹³⁾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⁴¹⁴⁾

4) 구속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⁴¹⁵⁾

5) 체포·구속영장의 재청구·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⁴¹⁶⁾

41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 참고

41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참고

41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참고

41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참고

41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 참고

41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참고

6)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부분이다. 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혹은 구속영장 집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준칙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⁴¹⁷⁾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해당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지만 받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해당 수사를 하는 경찰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지만 하고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수사절차법에서는 피의자의 적법절차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사준칙의 내용을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도록 하겠다.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¹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⁴¹⁹⁾

7) 체포·구속 등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⁴²⁰⁾

41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참고

41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 참고

41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항 참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나, 변호인 및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 없어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⁴²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⁴²²⁾

8) 체포·구속영장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⁴²³⁾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 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⁴²⁴⁾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⁴²⁵⁾

9) 피의자 석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체포 일시·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장소, 석방 사유 등을,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⁴²⁶⁾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⁴²⁷⁾

42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참고

4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참고

42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 참고

42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참고

42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참고

42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 참고

42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참고

10)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⁴²⁸⁾

11)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²⁹⁾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⁴³⁰⁾

12)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하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⁴³¹⁾

1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 유체물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 규정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 압수·수색에는 들어맞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4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 참고
42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고
42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참고
43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 참고
4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 참고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를 인정한 이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수사준칙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절차법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⁴³²⁾

이러한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⁴³³⁾

앞의 방법에 의한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⁴³⁴⁾

14)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⁴³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앞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⁴³⁶⁾

43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 참고

43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참고

43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참고

43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참고

43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2항 참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⁴³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⁴³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⁴³⁹⁾

15) 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⁴⁴⁰⁾

바. 시정조치 요구

1)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⁴⁴¹⁾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⁴⁴²⁾

43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3항 참고

43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4항 참고

43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5항 참고

44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 참고

44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참고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⁴⁴³⁾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⁴⁴⁴⁾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⁴⁴⁵⁾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⁴⁴⁶⁾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⁴⁴⁷⁾

2) 징계요구의 방법 등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⁴⁴⁸⁾

경찰관서장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⁴⁴⁹⁾

44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참고

44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참고

44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4항 참고

44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5항 참고

44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6항 참고

44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7항 참고

44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44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3)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 사실을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⁴⁵⁰⁾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⁴⁵¹⁾

사. 수사의 경합

1)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⁴⁵²⁾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 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⁴⁵³⁾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⁴⁵⁴⁾

2)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⁴⁵⁵⁾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⁴⁵⁶⁾

45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본문

45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단서

45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 참고

45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참고

45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3항 참고

45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참고

45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2항 참고

3) 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⁴⁵⁷⁾

45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 4 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영·미의 수사절차법

신 장 욱

제4장

영·미의 수사절차법

제1절 | 영·미 수사절차법

1. 영미 수사절차법 개요

본 연구는 영국의 1984년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of 1984(이하 PACE법이라고 함)'⁴⁵⁸⁾의 내용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법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경찰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제1부), 경찰의 출입, 수색, 압수 권한(제2부), 체포(제3주), 유치(제4부) 관한 내용과 이와 비교되는 미국의 형사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PACE법 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경찰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제1부), 대물적 강제처분은 수색, 압수 권한(제2부), 대인적 강제처분은 체포(제3부), 유치(제4부)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영국법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를 요약하고 난 뒤⁴⁵⁹⁾⁴⁶⁰⁾ 미국의 형사절차법과 비교법적 관련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PACE법 재정의 이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법의 기본법리인 Common Law(보통 법)의 역사와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1066년 Norman의 정복자 William은 잉글랜드를 정복할 당시 통일적인 재판시스

458)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의 원문은 영국의 입법부 홈페이지(<http://legislation.gov.uk>)에서 찾을 수 있음

459) 관련 법조항은 부록 부분에 별첨으로 첨부 하겠다.

460) 현재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에 대한 원문 번역은 김현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에 있어 다시 원문을 번역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수사절차법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고 난 뒤 미국 수사절차와 관련해 보완하기로 하겠다.

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었고, 민·형사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들은 지방의 재판소(Local Courts)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점차적으로 왕은 나라 전체에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자신의 재판기구를 만들었다.⁴⁶¹⁾

이 통일적인 법률을 잉글랜드에 적용하는 법체계를 사람들은 “Common Law” 보통 법이라 부르게 되었고, 국왕이 영국전체 또는 각 지역의 치안유지자들을 통해 그의 특권을 지켜온 역사가 바로 보통법의 역사라 할 수 있다.⁴⁶²⁾

보통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나 범죄 혐의로 고발 받은 사람은 수사·재판단계를 막론하고 사사 기관의 어떠한 신문에도 답변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지고 있지 않았다.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종전에 영국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성문법 규정 없이 판례와 법관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1912년 상급법원의 궁정의 판사들의 의해 만들어진 법관규칙(Judge Rule)은 1) 피의자에 대한 고지, 2) 피의자의 기소, 3) 고지하의 진술서 작성, 4) 기소된 자에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의 제시 등 경찰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만든 업무지침으로 통용되어왔다.⁴⁶³⁾

하지만, 이 법관 규칙은 오랜 세월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 영국에서는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4년 경찰과 형사 증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PACE법은 영국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는 법률이지만, 주로 개인이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있는 권한,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증거품 처리, 구금되어 있는 용의자를 대하는 절차, 용의자와 인터뷰에 대한 규율 절차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PACE법은 2005년 중대 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의해 크게 한번 수정된 적이

461) 김현숙,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7면
 462) 김현숙,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7면
 463) 김현숙,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8면

있다. 예를 들어, 체포 가능한 카테고리에 안에 있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일반 체포 권한으로 대체되었다.⁴⁶⁴⁾

PACE법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영국 세관, 같은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과 국방부 소속 군사 경찰 수사에도 적용된다.⁴⁶⁵⁾ 형사범죄를 조사하거나 범죄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또한 실용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한 PACE 실행 강령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⁴⁶⁶⁾

PACE법의 목적은 경찰의 권한을 하나의 관행 및 법률절차로 통합하고, 개인의 인권과 경찰의 권한 사이의 균을 신중하게 맞추는 것에 있으며, PACE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코드는 다음과 같다.

PACE 법률 조항별 목록	
PACE Code A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먼저 체포를 하지 않고, 사람이나 차량을 수색하는 행위
PACE Code B	건물을 수색하고 건물과 사람에게서 발견된 재산을 압수 및 보유할 수 있는 권한
PACE Code C	경찰이 경찰에 구금된 사람들을 구금, 치료 및 심문하기 위한 요건
PACE Code D	범죄 수사 및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 기록 유지와 관련하여, 경찰이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법
PACE Code E	경찰에게서 용의자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한 조항
PACE Code F	용의자와의 인터뷰 소리와 함께 영상 녹음
PACE Code G	법적 구속력
PACE Code H	테러 용의자의 구금

PACE법령은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제정된 법안으로 경찰의 정지 및 수색권, 수색영장, 구금, 체포, 유치절차 등 경찰권 행사의 실무규칙을 제시하는 법령이며 이는 형사절차상 증거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담고 있다.

경찰관이 PACE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에 마주할 수 있다.⁴⁶⁷⁾

- 1) 증거 제시 불가능
- 2) 사법적 비판 & 부정적 언론 논평

464) Spencer, J.R.(2007). "Arrest for Questioning". Cambridge Law Journal, 66(2): 282-284.

465)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ection 113

46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ection 67(9)

467)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ection 2.9

- 3) 관련 수사관에 대한 징계
- 4) 법원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증거인정을 거부하는 확률(피고의 철회 또는 무죄)

PACE 형사절차법과 함께 미국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 영·미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1. 영국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가. 경관의 사람, 차량 등 정지 및 수사권⁴⁶⁸⁾

PACE법령 Code A는 경찰의 정지 및 수색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지 및 수색의 목적은 체포이행 없이 범죄혐의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데 목적에 있으며, 사람 또는 차량을 정지 및 수색할 권한이 주어진다.

경찰관은 PACE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정지 및 수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⁴⁶⁹⁾ 공공장소 또는 거주지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유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가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할 때)에서 이행할 수 있다.⁴⁷⁰⁾

PACE의 섹션1에 따라 경관은 대상자가 마약, 무기, 장물(Stolen Items), 금지품목(Prohibited Articles),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의 소지/사용/통제할 것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대상자나 차량을 정지, 구금 및 수색할 수 있다. 단, 정지 및 수색을 통해 정식 체포권을 발부하기 전까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정지 및 수색을 실시하기 전, 경찰관은 PACE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Reasonable

468)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de A

469)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470)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Suspicion”(합리적 의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⁴⁷¹⁾⁴⁷²⁾

2.1 조항에 의거하여, 1.03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정지 권한과 수색권한에 적용된다.⁴⁷³⁾⁴⁷⁴⁾

2.1.1(a) 권한을 사용하기 전,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의 근거가 필요하다(도난 및 금지 물품에 대한 PACE 섹션 1 및 규제 약물에 대한 1971년 약물남용법 섹션 23과 같이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소지한 물품).⁴⁷⁵⁾

2.1.2.(b) 1994년 형사법 및 공공질서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심각한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나 사람들이 경찰 지역의 모든 지역 내에서 위험한 도구나 공격용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에 근거하거나 또는 심각한 폭력 사건에 사용된 도구나 무기를 찾기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⁴⁷⁶⁾

나. “합리적인 의심”의 정의란

합리적인 의심 근거는 경찰이 PACE의 섹션 1(도난 또는 금지된 물품 찾기) 및 섹션 23과 같은 권한에 따라 개인 또는 차량을 정지 및 구금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이 테스트는 각 경우의 특정 상황에 적용해야 하며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경관은 수색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대상을 수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함을 근거하여 의심해야 한다.⁴⁷⁷⁾

471)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Code A

472) See the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OPSI) website: www.opsi.gov.uk for full texts for these Acts of Parliament.

47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Revised code of Practice for the exercise by: Police Officers of Statutory Powers of Stop and Search) – 2014년

474) 2.1 This code applies, subject to paragraph 1.03, to powers of stop and search as follows:

475) (a) powers which requi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icion, before they may be exercised; that articles unlawfully obtained or possessed are being carried such as section 1 of PACE for stolen and prohibited articles and section 23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1 for controlled drugs;

476) (b) authorised under section 60 of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based upon a reasonable belief that incidents involving serious violence may take place or that people are carrying dangerous instruments or offensive weapons within any locality in the police area, or that it is expedient to use the powers to find such instruments or weapons that have been used in incidents of serious violence;

477)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1

둘째, 물체가 발견될 것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⁴⁷⁸⁾ 이는 문제의 물체가 발견될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 정보 및/또는 정보에 근거한 의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리적인 사람이 다음을 기반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관적인 의심 사유가 아닌 조금 더 정확한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사실과 정보 및/또는 정보를 기반하여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⁴⁷⁹⁾

객관적인 이유에는 대상자의 행동, 말투, 목격된 장소, 대상자의 관련된 정보, 대상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단순한 육감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요소에 의한 합리적 의심기준을 성립해야 한다.

경찰관은 관련 사람에 대한 정보나 정보 또는 특정 행동을 참조하여 의심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3.8(d), 4.6 및 5.5항 참조),⁴⁸⁰⁾ 본조 제3항부터 5항에 따라 장물이나 금제품, 물품(제8A항에 관련된), 불법화약물품(제8B항)을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사람이나 차량(내외부)를 수색할 수 있고, 수색할 목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⁴⁸¹⁾.

경찰이 정지하면, 수색을 수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한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정지 및 수색절차가 불법적 절차로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경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⁴⁸²⁾

- 1) 수색하는 이유(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 2) 수색에 구체적인 법적근거
- 3) 수색을 통해 찾으려고 하는 금지품목
- 4) 경관의 이름, 등록번호 또는 영장(제복을 입지 않은 경우)
- 5) 그들이 위치한 경찰서
- 6) 정지 및 수색 보고서 사본을 접근하는 방법 및 위치

478)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2.2B

479)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1

480)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Section 60)

481)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482)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1

실무규칙에 따르면, 수색기록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경찰관이 기록한 수색의 기록에 대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한다.⁴⁸³⁾

보편적인 수색은 사람이거나 차량이 처음 구금된 장소 또는 근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탈의가 필요한 수색은 반드시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경찰서 혹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⁴⁸⁴⁾.

- 1) 피상적 수색⁴⁸⁵⁾: 경관이 대상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옷깃, 양말, 신발 안쪽으로 만져 겉옷, 재킷 또는 장갑을 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 2) 철저한 수색⁴⁸⁶⁾: 셔츠를 탈의할 수 있지만, 경찰버스나 경찰서와 같이 대중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
- 3) 탈의 수색⁴⁸⁷⁾: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수색이며, 경찰서 또는 다른 가까운 장소에서 대중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행되어야 함.

참고로, 경찰관은 정지 및 수색 중에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따른 인권의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찰관은 인종, 나이, 성별, 성적취향, 성전환, 장애,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순전히 정지 및 수색을 이행하기 힘들다.⁴⁸⁸⁾

또한 PACE 법령은 경찰이 대상자를 멈추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일한 법안이 아니다. PACE와 관련된 기타 정지 및 수색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 1) 테러방지법(The Terrorism Act 2000, Section 43 & 47a)
- 2) 1971년 약물 남용금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1, Section 23, 규제 약물 검색)
- 3) 불법총기 방지법(The Firearm Act 1968, Section 47)

48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3

4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3.4

485)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3.5

48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3.6

487)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A, Section 3.7

488) Equality Act 2010(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이유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으로 9가지로 한정된다.

2. 미국의 정지 및 수색할 권리

가. Terry Stop/Stop and Frisk

원래 미국경찰의 불심검문은 미국헌법 제4조(정부의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는 헌법 조항)을 위배한다는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⁴⁸⁹⁾ Terry v. Ohio, 392 US 1, 88S. Cy. 1868, 20 L. Ed. 2d 899(1968) 이후 경찰의 정지 및 수색에 대한 권한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한 범죄혐의가 있는 자를 정지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미국 경찰의 정지 및 수색에 대한 권한목적은 경찰의 보호와 사회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⁴⁹⁰⁾

경찰의 정지할 권한은 대법원 판례(Terry v. Ohio)에 의해 모든 주로 권한이 퍼져나 갔다.⁴⁹¹⁾

본 재판은 “경찰관이 범죄 활동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되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에 못 미치더라도, 수사의 목적을 기반으로 사람을 정지하고 잠시 구금할 수 있다.”⁴⁹²⁾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판례로 인해, Terry Stop(테리 스탑)에 대한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Fourth Amendment Rights)로 보장받으며, 미국 모든 사법경찰, 경찰, 법집행관들은 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미국 사법경찰의 정지·수색의 권한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 의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89) Terry v. Ohio, 392 US 1, 88S. Cy. 1868, 20 L. Ed. 2d 899(1968)

490) 김원중, 미국헌법학회, 미국의 불심검문 판례동향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top and Frisk of the Supreme Court in United States)

491) “we held that the police can stop and briefly detain a pers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has a reasonable suspicion supported by articulable facts that criminal activity “may be afoot,” even if the officer lacks probable cause(Terry v. Ohio, 392 U. S. 1, 30(1968)).

492) Terry v. Ohio, 392 US 1, 88S. Cy. 1868, 20 L. Ed. 2d 899(1968) 번역

나.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 의심) 정의

To have reasonable suspicion that would justify a stop, police must have “specific and articulable facts” that indicate the person to be stopped is or is about to be engaged in criminal activity...Reasonable suspicion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Reasonable suspicion is a vague term and the Supreme Court concluded it should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⁴⁹³⁾

경찰의 정지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 위해, 경찰은 정지하는 대상이 범죄 활동에 참여했거나 혹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는 개별사건마다 사건의 정황을 보며 판단한다.⁴⁹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기준의 대한 3가지 유형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⁴⁹⁵⁾⁴⁹⁶⁾

- 1) 제3자의 정보내용
- 2) 대상자의 외형과 이상행동(긴장된 행동, 과장된 침착함, 도망)
- 3) 범행 시간과 장소의 연관관계(잘못된 장소)

경찰관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하며, 용의자가 왜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93) Susskind, R.S.(1993). “Race, Reasonable Articulate Suspicion, and Seizur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31: 327. Retrieved 13 November 2018.

494) Susskind, R.S.(1993). “Race, Reasonable Articulate Suspicion, and Seizur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31: 327. Retrieved 13 November 2018. 번역

495) Alpert, Geoffrey P.; Macdonald, Jogn M.; Dunham, Roger G.(May 2005). “Police suspicion and Discretionary Decision Making During Citizen Stops”. Criminology. 43(2)“ 407-434.

496) Susskind, R.S.(1993). “Race, Reasonable Articulate Suspicion, and Seizur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31: 327. Retrieved 13 November 2018.

정지의 기준(Reasonable Suspicious)과 마찬가지로 수색에 대한 기준도 동일하다.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suspect is armed and dangerous/ An officer / agent cannot automatically frisk everyone lawfully “stopped” under Terry. In addition to reasonable suspicion that criminal activity is afoot, the officer /agent must also be able to articulate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suspect is armed and dangerous. “Officer Safety” alone will not justify a frisk. The officer /agent must articulate “why” officer safety was an issue(exactly what risk / danger to the officer / agent or others existed)⁴⁹⁷.

Terry v. Ohio, 392 US 1(1968), Ybarra v.Illinois, 444 US 85(1979).

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위험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참고로, 경찰관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지를 이행했다고 해서, 대상자를 수색(Frisk)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상자가 사기범죄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경찰관은 해당 대상자를 수색할 수는 없다. 사기범죄 의심 대상자가 옷 안에 펜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당 경찰관은 상대의 몸을 수색할 수는 없다.(예외 상황: 만약 상대방이 펜으로 다른 이나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펜은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수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위험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를 수색할 수는 없다. 위협의 강도, 정황, 타인의 존재여부 등 전체적인 정황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한, Terry Stop & Search로 인한 수색은 Pat-Down Search(흉기, 마약 따위의 소지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옷 위를 더듬어 내려가며 조사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그

497) Terry v. Ohio, 392 US 1(1968), Ybarra v.Illinois, 444 US 85(1979). 대법원 판례 참고

이상의 수색행위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혹은 예외사항) 혹은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다. 차량 정지 및 수색

Terry Stop같은 경우, 대상자의 불심검문의 수색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는 용의자(운전자 및 동승자)가 위협할 수 있는 경향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⁴⁹⁸⁾

정지 및 수색이행 제한시간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경찰이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었던 기간동안 의혹을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을 부지런히 추구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⁴⁹⁹⁾

또한, 경찰은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다면, Passenger Compartment, 차량 내부,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한정)를 수색할 수 있다. 이 이상의 수색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혹은 적법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⁵⁰⁰⁾

498) Michigan v. Long, 463 U.S. 1032(1983) (suspect appear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officer spied hunting knife exposed on floor of front seat and searched remainder of passenger compartment). Similar reasoning has been applied to uphold a “protective sweep” of a home in which an arrest is made if arresting officers have a reasonable belief that the area swept may harbor another individual posing a danger to the officers or to others. Maryland v. Buie, 494 U.S. 325(1990).

499) United States v. Sharpe, 470 U.S. 675, 686(1985). A more relaxed standard has been applied to detention of travelers at the border, the Court testing the reasonableness in terms of “the period of time necessary to either verify or dispel the suspicion.” United States v. Montoya de Hernandez, 473 U.S. 531, 544(1985) (approving warrantless detention for more than 24 hours of traveler suspected of alimentary canal drug smuggling).

500) Samaha, Joel(2011). Criminal Procedure(8th ed.)

제3절 | 영·미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1. 영국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가. 출입·수색·압수 권한

PACE 법령 제8조에는 영장에 의한 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색영장의 조항은 경관의 장소 출입·수색·압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 재산에 대한 존중은 1998년 인권법의 핵심 원칙으로 출입·수색·압수 권한은 점유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수색영장 수행 전에 정당한 수색 행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색 및 압수 권한은 불법적인 차별없이 수색중인 건물을 점유하거나 압수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개정은 경관이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취향, 결혼 및 민법상의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 희롱, 또는 희생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⁰¹⁾

치안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 전, 경관은 청구서상(Application)안⁵⁰²⁾⁵⁰³⁾에

- 1) 기소가 가능한 범죄 사실(Indicatable Offenses)
- 2) 법령 제1A항에 해당되는 장소 안에 범죄수사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품 (substantial value)이 있고,
- 3) 해당 물품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연관(relevant)이 있으며,
- 4) 법적 면책품, 제외품이나 특별절차를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며,
- 5)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501) Equality Act 2010(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이유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으로 9가지로 한정된다.

502)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Schedule 1, Paragraph 12

503)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기재된 글이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하여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안판사는 청구서안에 명시되어 있는 각각의 장소에 경관이 진입하여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⁵⁰⁴⁾

참고로 경관은 청구서 작성 시, 해당정보가 정확하고 최근의 정보를 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악의적으로 또는 무책임하게 제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⁵⁰⁵⁾

경관은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 질문에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⁵⁰⁶⁾

- 1) 해당 장소의 예상 점유자와 건물 자체의 특성
- 2) 해당 장소가 이전에 얼마나 또는 최근에 수색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 3) 기타정보 등 언급된 장소

제1항1b호에서 언급된 장소⁵⁰⁷⁾에는

- 1) 영장신청서에 특정된 장소 하나 이상을 의미 또는,
- 2) 신청서에 사람이 점유 혹은 관리하는 장소,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장소가 포함 (해당 신청서는 “포괄영장”을 말한다.

포괄 영장 신청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1)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범죄사실 때문에, 제1항 B호에 언급된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신청서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는 용의자가 점유 혹은 관리하는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신청서에

50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Code of practice for searches of premis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eizure of property found by police officers on persons or premises)

505)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Code of practice for searches of premis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eizure of property found by police officers on persons or premises)

50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Code of practice for searches of premis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eizure of property found by police officers on persons or premises)

507)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Code of practice for searches of premis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eizure of property found by police officers on persons or premises)

용의자가 점유 혹은 관리하고 수색 되어야 하는 장소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치안판사는 포괄 영장신청서를 발부 할 수 있다⁵⁰⁸⁾.

경관의 포괄영장신청서⁵⁰⁹⁾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청이 이루어진 법령
- 2) 영장장소(한곳 혹은 다수)
- 3) 수색장소
- 4) 수색의 목적
- 5) 신청서 작성 사유(증거발견 혹은 증거관련 내용)
- 6) 단일영장(PACE 조항8 혹은 스케줄1 12문단이 따라) 혹은 다수의 수색영장장소 목록 및 수색 인원 명수 기재
- 7) 수색장소를 점유 혹은 소유하는 자에 대한 정보

경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수색을 통하여 압수된 물품은 압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⁵¹⁰⁾. 하지만, 경관은 영장 신청서를 기입할 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있어 승인하였던 것은 다음의 수색의 승인에 대한 관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1) 법적 면책 물품
- 2) 제외품목 혹은 특별절차 품목

법적 면책물품의 의미⁵¹¹⁾⁵¹²⁾

- 1) 전문법률 고문과 의뢰인(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조언이나 조언에 관련된 연락수단

50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509)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Section 3

510)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Section 6.9

511)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Section 10

512)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 2) 전문법률 고문과 의뢰인(대리인)의 사이에 이루어진 법적절차에 관한 조언이나 절차에 관련된 모든 연락수단
- 3) 연락과정에서 언급된(혹은 동봉된) 물품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연락수단
 - 법적 조언에 관련된 물품
 - 법적절차나 법률진행을 위해를 만들어지거나 관련된 물품

하지만, 앞으로의 범행목적에 쓸 목적을 가지고 있던 물품은 법적 면책물품이 아니다. 제외품⁵¹³⁾은 직업상 업무를 위하여 만들거나 획득하여 비밀로 보관하는 사적인 기록을 말하며,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비밀로 보관하고 있는 인체조직이나 체액 혹은 비밀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혹은 이외의 기사자료를 뜻하며, 특별절차물품이란 제2항에 적용되는 물품과 제외품이 아닌 기사자료(직업기간동안 특별절차를 통해 만들거나 획득한 물품)를 의미한다.⁵¹⁴⁾

영장수색을 이행하는 동안, 경관은 수색에 승인되어진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⁵¹⁵⁾ 또한 장소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자와 연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만일 연락이 되더라도 그 증거에 접근하게 할 권한이 있는 관련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다.⁵¹⁶⁾

또한, 영장의 집행에 있어, 오직 경찰관의 감독 하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⁵¹⁷⁾, 가택영장 수사와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장에 따른 출입 및 수색이행이 상당히 지체될 시에 수색목적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⁵¹⁸⁾, 수색장소에 점유자가 상주하고 있을 시 신분과 수색영장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Paragraph 7.9B

514)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515) General Powers of Seizure(Section 19)

516)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517)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Section 5

518)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 Code B, Section 5

2. 미국의 출입·수색·압수 권한

가. 내용

헌법 제4조에 의거 법집행관은 범죄활동을 조사하는 동안 법적 수색 및 압수하려면 치안판사의 서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⁵¹⁹⁾ 적법한 영장이 없는 수색 및 압수는 불허하며, 경찰관은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⁵²⁰⁾

수색영장은 일반적으로 수색의 전제 필수조건이며, 이는 불합리한 정부의 물리적 침입 또는 침범으로부터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⁵²¹⁾

이 권리의 기원은 불법적인 정부수색 및 압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헌법 제4조에 있으며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해당 경찰관은 수색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범죄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⁵²²⁾⁵²³⁾가 있거나 불법 활동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증인 진술 및 재판에서 허용되지 않을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증인의 진술, 증거품, 정황증거 등)를 기준으로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의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의심 혹은 심증만으로는 Probable Cause가 성립되지 않는다.⁵²⁴⁾

현재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수색할 장소나 물건에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으며, 용의자의 해당 장소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침범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대법원은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정당한

519) Under the Fourth Amendment, law enforcement must receive written permission from a court of law, or otherwise qualified magistrate, to lawfully search and seize evidence while investigating criminal activity. A court grants permission by issuing a writ known as a warrant. A search or seizure is generally unreasonable and unconstitutional if conducted without a valid warrant and the police must obtain a warrant whenever practicable.

520) *Payton v. New York*, 445 U.S. 573(1980)

521) *Ybarra v. Illinois*, 444 U.S. 85(1979), *Michigan v. Summers*, 452 U.S. 692(1981)

522) *Carroll v. United States*, 267 U.S. 132, 149(1925)

523) *Groh v. Ramirez*, 540 U.S. 551(2004).

524) *Aguilar v. Texas*, 378 U.S. 108, 114-15(1964)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⁵²⁵⁾

첫째, 당사자는 그 장소나 사물이 사적인 공간 혹은 물품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를 가졌는지에 대한 판단과 둘째, 용의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즉,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합리적인 사람(제3자라면)은 사생활 보호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⁵²⁶⁾

쉬운 예로는 거주지 혹은 사무실 같은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 같은 경우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 수색영장 신청서의 조건

Probable Cause(상당한 원인⁵²⁷⁾): 경찰관은 불법의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관찰이나 제보자의 관찰에서 나올 수 있으며, 영장에 수색 대상 및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그 수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편적으로 수색영장 신청서안에 수색할 장소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⁵²⁸⁾ 중립적이고 분리된(Neutral and Detached) 치안판사 혹은 판사의 서명이 요구된다.⁵²⁹⁾

다. 수색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법한 영장이 없는 증거는 모두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 형사법 같은 경우 영장없는 수색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몇 가지 명시하고 있다.⁵³⁰⁾

대법원 판례 Katz⁵³¹⁾에 의거하여, “사건승인 없이 사법절차 범위 밖에서 이행된 수색은 몇 가지 세부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헌법 4조에 해당되어 금지된다.”⁵³²⁾라고

525) *Ybarra v. Illinois*, 444 U.S. 85(1979), *Michigan v. Summers*, 452 U.S. 692(1981) 등.

526) *Ybarra v. Illinois*, 444 U.S. 85(1979), *Michigan v. Summers*, 452 U.S. 692(1981) 등.

527) *Groh v. Ramirez*, 540 U.S. 551(2004).

528) *United States v. Grubbs*, 547 U.S. 90(2006).

529)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1971).

530) The Supreme Court in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1967) held that “searches conducted outside the judicial process, without prior approval are prohibited under the Fourth Amendment, with a few detailed exceptions.”

531)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1967)

532)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1967)

명시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영장 없는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대법원 판례로 남고 있다.

대법원에 판단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몇몇 수색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Plain View Doctrine(명백한 시야 원칙)

경찰관이 합법적으로 구내에 있거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발견된 대상물건이 범죄적 성격으로 명백할 경우, 경찰관은 수색영장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압수할 수 있고, 각각의 사람들은 대중(Public)에게 노출 되는 물건에 대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 없다.⁵³³⁾

2) Exigent Circumstances(긴급상황)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을 확보하거나 영장없이 수색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⁵³⁴⁾ 다만, 긴급상황이 경찰관/법집행관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해당 수색은 적법한 수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⁵³⁵⁾

3) Hot Pursuit(중범죄 추적)

경찰관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대상자를 체포하고 수색할 수 있다. 추적을 위해, 경찰관은 영장 없이 증거를 수색하고 압수하기 위해 수색을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중범죄가 아닌 경우 예외사항에 포함시킬 수 없다.⁵³⁶⁾

4) Automobiles(차량)

경찰관은 자동차를 수색하기 전, 범죄의 증거 또는 밀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색영장 없이 트렁크, 수하물 또는 증거 또는 밀수품을 포함할 수 있는 기가 컨테이너를 포함한 자동차를 수색할 수 있다.⁵³⁷⁾

533)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1990).

534) *Illinois v. McArthur*, 531 U.S. 326(2001).

535) *Kentucky v. King*, 563 U.S. 131(2011).

536) *Welsh v. Wisconsin*, 466 U.S. 740(1984).

5) Consent(허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는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수색에 동의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협박으로 동의한 경우 해당 권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동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법한 동의였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영장이 있다고 잘못 진술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진술에 의존하여 제공된 동의는 적법하지 않고⁵³⁸⁾, 동의에 대한 보류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동의는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⁵³⁹⁾

이외에도 권한의 예외조항, 행정수색, 정지 및 수색 예외조항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수색에 대한 결정은 경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예외조항에 성립되지 않고 수색영장이 필요했던 증거가 발견될 시에는 이는 불법적인 수색으로 간주하고 증거에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 영·미의 체포 절차

1. 영국의 체포 절차

가. 긴급체포

1) 대상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of 1984(PACE법) 법령에 의하면, 경관은 영장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다.⁵⁴⁰⁾⁵⁴¹⁾

537) *Caroll v. United States*, 267 U.S. 132(1925).

538) *Bumper v. North Carolina*, 391 U.S. 543, 549(1968).

539) *Schneckloth v. Bustamonte*, 412 U.S. 218, 233(1973).

540)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4A: Arrest without Warrant)

541)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 1)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는 자나 실행중인 자
- 2)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자

따라서 경관은 대상자가 이미 범죄가 발생되어졌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그 범죄의 범인(동일한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부합)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⁵⁴²⁾⁵⁴³⁾. 또는 범죄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가 범죄인이거나 범죄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경관은 범죄인(당사자)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위 조항에서 부여된 긴급체포권한은 경관이 현 용의자를 체포할 이유가 있으며 체포 이행 전, 경관은 체포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⁵⁴⁴⁾

2) 요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⁵⁴⁵⁾⁵⁴⁶⁾.

- 1) 용의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경관이 알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 확인이 쉽지 않을 때, 대상자가 제시한 정보가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⁵⁴⁷⁾
- 2) 용의자의 주소와 관련해서도 같은 사정이 있을 때 ⁵⁴⁸⁾
- 3) 용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할 때, 상해로 고통을 받을 때,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을 때, 풍기문란에 범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4) 불법적인 고속도로 교통장애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5) 범죄 또는 용의자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허용하기 위할 때, 6) 용의자의 도주로 초래될 범죄 소추를 막기 위할 때, 7) 제 5항c호iv목은 그들의 사무와 관련하여 용의자를 피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⁵⁴⁹⁾

542)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4A: Arrest without Warrant)

543)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544)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4A: Arrest without Warrant)

545)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4A: Arrest without Warrant)

546)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547)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48)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또한 경관이외에 다른 이도 영장없이 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기소가 능범죄(Indicatable Offense) 를 실행중인 사람이거나 실행중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⁵⁵⁰⁾

조항 1.3에 따르면, 경찰의 권한은 보호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인권의 침해가 덜 가는 수단으로 필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하며, 체포의 권한을 단순사용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며, 체포의 권한을 행사할 정당성이 없다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체포의 권한은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⁵⁵¹⁾

이외에도 적법한 체포에는 1)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2) 그 사람의 체포가 중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⁵⁵²⁾

2.2에 따르면, 체포한 경찰은 체포된 대상자에게 자신이 체포되었음을 알리고, 2가지 요소와 관련된 체포의 해당 상황을 알리고 경찰서에 도착하면 이를 보관담당자에게 알려야한다.⁵⁵³⁾

3) 긴급체포시 고지 내용

체포시 고지해야 되는 정보는 체포 시 가능한 체포 후에 바로 체포에 대한 의무고지를 해야 적법하다.⁵⁵⁴⁾ 만약 체포자는 체포 시(또는 체포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의무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체포는 불법이다.⁵⁵⁵⁾ 예외사항은 체포의 이유가 고지되기 이전에 대상자가 도주하여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체포의 사실 또는 의무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⁵⁵⁶⁾

549)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0)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67(9))

551)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2)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Code G, 2.1)

553)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4)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5)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6)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나. 임의 출석

경찰서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경찰조사를 돕기 위해 경관이 있는 장소(경찰서 또는 그 이외의 장소), 체포하지 않고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경관이 동행하였을 때는 1) 체포되지 않는 한 원하는 경우 떠날 권리가 있으며, 2) 대상자가 자유로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할 때는, 그를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⁵⁵⁷⁾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서에 유치되어야 하며, 용의자를 체포한 후, 인계된 최초경찰서가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우, 석방되지 않은 한 최초경찰서에 도착한 후 6시간 이내에 지정경찰서로 인계되어야 한다.⁵⁵⁸⁾

다. 보석

경관은 제30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체포되거나 유치된 사람을 보석석방 할 수 있다. 또한 제 1항에 따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석할 수 있으며, 석방된 이는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⁵⁵⁹⁾

제1항에 따라 보석석방을 할 때에는 1) 보석보증금을 받지 않아야하고, 2) 다른이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3) 보증금 또는 보증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하며, 4) 석방 전 숙소에서 거주할 조건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다.⁵⁶⁰⁾

다만, 제3A항에 따라, 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석에 조건을 부여하여 이행할 수 있다.⁵⁶¹⁾ 1) 구금장소에 출석 보증할 것, 2) 보석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보증, 3) 관련 목격자에 개입된다거나, 그 또는 다른이의 관련된 사법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4) 대상자를 보호할 것 또는 17세 미만일 때, 대상자의 복지 또는 이익을 위할 것

557)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8)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59)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60) The Police & Criminal Evidence Act 1984(Section 28: Records of Arrest)

561)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2011 논문 참조

2. 미국의 체포 절차

가. Law of Arrest(영장없이 체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법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판사(또는 치안판사)가 해당 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공식서명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⁵⁶²⁾

영장은 일반적으로 체포가 승인된 범죄를 인식하고 체포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영장을 받기 위해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서한 진술서 안에 범죄명, 대상자 정보, 그리고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적 정보(Probable Cause)를 진술해야 한다.⁵⁶³⁾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경찰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과 전체적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 체포의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합할 수 있다.⁵⁶⁴⁾

위에서 기재한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 의심) 보다 높은 기준이며, 재판에서 보다 더 자세한 객관적 정보와 정황상황들을 비교한다.

나. 체포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

경찰관이 해당 대상자가 중범죄(Felony)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상 용의자가 자택에 있으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경찰관은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당사자가 소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

562) Payton v. New York, 445 U.S. 573(1980).

563) Maryland v. Pringle, 540 U.S. 366(2003)

564) The Fourth Amendment protects citizens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s, search warrants without valid affidavits, and arrests made without probable cause.

다. 체포 시 고지해야 되는 정보

경찰은 해당 용의자를 체포 시 반드시 미란다 원칙⁵⁶⁵(Miranda Rights)를 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개인은 심문을 받기 전 설명해야 하는 특정한 권리이며, 이 권리는 헌법 제5조(5th Amendment)에서 자기부죄거부(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권리 보호를 고안된 법안이다.⁵⁶⁶

라. 보석(Bail)

보석에 대한 자세한 형사절차는 주마다 다르다. 연방형사법(연방형사법 범죄를 위반한 경우) 기준으로, 1984년 보석개혁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저 보석금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석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연방 형사 소송 규칙 5항에 명시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⁵⁶⁷

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법령은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s 3141-3143에 의거하여 법원은 1) 피고인 일반 석방⁵⁶⁸, 2) 조건부 석방, 3) 특정조건에 일시적 구금⁵⁶⁹, 4) 구금⁵⁷⁰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⁵⁷¹

법원은 판사가 석방이 법에서 요구하는 피고인의 출석이 합리적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⁵⁷²

565) *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566) Fifth Amendment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e Sixth Amendment right to counsel

고지 내용 묵비권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에 대한 답변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사의 선임 권리(심문, 진술, 재판 과정 등),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 시, 정부에서 고용해줄 수 있다는 사실

567)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s 3141-3143

568) 18 U.S.C. §3141(a).

569) 18 U.S.C. § 3142(a)(2),(c).

570) Id. § 3142(a)(3),(d).

571)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s 3141-3143

572)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142(c)

조건부 석방을 이행할 시에는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조건만 부과할 수 있다.⁵⁷³⁾

조건부 석방의 조건목록으로는 1)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보증, 2) 제3자의 감시에 있는 구금상태, 3) 직장 유지(출근·퇴근 시간 엄수), 4) 재학 이행 유지 혹은 개시, 5) 사생활(여행, 만남제한 등) 제한, 6) 관련 피해자나 증인들과의 접촉 금지, 7) 담당 법집행에게 정기적 보고, 8) 통행금지, 9) 총기, 마약, 술 소지금지, 10) 의료 치료 실시, 11) 재산 담보(채권), 12) 피고인의 출석보장과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는 기타합리적인 조건 등이다.⁵⁷⁴⁾

제5절 | 영·미의 구금 절차

1. 영국의 구금⁵⁷⁵⁾ 절차

영국 경관은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PACE)의 4부 및 5부에 명시된 범죄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여러 수사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구속 중 수집된 정보는 경찰이 용의자를 형사 범죄로 기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 구금기간

PACE법령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는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피의자의 구속을 검토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⁵⁷⁶⁾

체포된 개인은 일반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최대 24시간 동안만 구금될 수 있지

573)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142(c)(1)(B).

574)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142(c)(1)(B).

575) 일반적 번역은 '유치'로 하고 있다. 유치에는 구금과 구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576) Home Office, PACE Code C, paragraph 1.1.

만⁵⁷⁷⁾ 그들이 의심되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의심될 경우 고위 경찰(경장 이상)이 해당 용의자를 추가로 12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⁵⁷⁸⁾

참고로, 36시간 초과하는 구금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⁵⁷⁹⁾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ase)같은 경우 법원은 최대 4일동안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⁵⁸⁰⁾

나. 구금의 상황

구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⁵⁸¹⁾ 구금 환경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는 적절한 법률 및 의학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⁵⁸²⁾ 계구를 사용을 사용할 시에는 그 계구의 사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⁵⁸³⁾

구금자의 권리(Detainee Rights Under PACE Code C)에 따라 경찰은 1) 구금자의 체포 및 구금된 사유에 대한 고지, 2) 구금자는 언제든지 변호사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고지, 3) 구금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서면 요약을 제공, 4)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5) 음식과 물을 제공(구금자에게 하루 3끼 및 물 제공), 6) 질문을 하지 않고 정기적 휴식 제공(가능한 경우, 공기의 질 보증)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⁵⁸⁴⁾

다. 신문(Investigation)

피의자가 구금되면 경찰은 그들을 신문하고 생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경찰이 PACE Clock이 만료되기전까지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상 피의자를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⁵⁸⁵⁾

577) s41,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78) s42,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79) s43,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80) s43 and s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81) PACE Code C
582) PACE Code C
583) PACE Code C
584) PACE Code C
585) PACE Code C

신문은 “Under Caution(주의하에)” 진행되며 녹음되어야 한다.⁵⁸⁶⁾ 신문을 수행하기 전에 경찰은 피의자가 의심되는 사항을 알리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언제든지 법률자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⁵⁸⁷⁾

경찰은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No Comment(답변 없음)”이라 답이 가능하다.⁵⁸⁸⁾ 신문 후 피의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⁵⁸⁹⁾

인터뷰 수행에 대한 법적지침⁵⁹⁰⁾과 신문 중 녹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⁵⁹¹⁾

라. 생체정보

경찰은 구금된 피의자의 사진, 지문 및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⁵⁹²⁾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문과 DNA 정보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대상자들은 해당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⁵⁹³⁾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된 피의자는 1) 법원의 처분 청구 또는 발급⁵⁹⁴⁾, 2) 선납 보석금으로 석방, 3) 조사 중 출석(RUJ), 4) 석방(더 이상 범죄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통지 제공)⁵⁹⁵⁾을 할 수 있다.

경찰관은 “PACE Clock” 내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금중인 피의자를 기소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PACE Clock내에서 혐의를 제기할 수 없고,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 현재 선금 보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⁵⁹⁶⁾

586) Home Office, PACE Code C, paragraph 11.1A and 11.7

587) s58,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88) Home Office, PACE Code C, paragraph 12.5

589) Home Office, PACE Code C, paragraph 11.11

590) PACE Code C 11, 12

591) PACE E, F

592) s61- 64A,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93) ACRO Criminal Records Office, Retention Schedule, [last accessed 6 March 2020]

594) See section 4 of the Library’s briefing police powers: an introduction for information on charging and out of court disposals

595) s34(5C),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596) s30A(1),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and College of Policing, APP Detention and custody: Response, arrest and detention, section 8(pre-charge bail management), [last accessed]

2. 미국의 구금 절차

미국 법령 18 U.S. Code § 3142에 의거하여, 법관은 어떤 조건이나 조건에 요구되는 사람의 출석보장과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전에 해당 사람을 구금하도록 명령해야한다.⁵⁹⁷⁾

(f)(1)에 명시된 연방 범죄 또는 다음 하위 Section(f)(1)에 명시된 지역/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연방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2) 연방(Federal), 주(State), 지역(City)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석방된 동안 Section(A)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3)(A)항에 기재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또는 감옥에서 석방된 날 중 더 낮은 날짜로부터 5년을 넘지 않은 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법관은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다른 사람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 가능하다.⁵⁹⁸⁾

법관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되는 사람의 출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⁵⁹⁹⁾

1) 약물 규제법(21 U.S.C. 801 이하), 약물 수출입 규제법 (21.U.S.C. 951 이하)에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 2) Section 924(c)(마약범죄외 관련된 총기소지), 956(a)(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2332b(테러)에 의거한 범죄⁶⁰⁰⁾, 3)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미국법 Section(g)(5)(B) of Title 18(테러), United States Code⁶⁰¹⁾, 4)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 77장에 따른 범죄(인신매매)⁶⁰²⁾, 5) 미성년자 관련 범죄⁶⁰³⁾(Section 1201, 1591, 2241, 2242, 2244(a)(1), 2245, 2251, 2251A, 2252(a)(1), 2252(a)(2), 2252(a)(3), 2252A(a)(1), 2252A(a)(2), 2252A(a)(3), 2252A(a)(4), 2260, 2421, 2422, 2423, or 2425 of this title 의거)를 범한 경우에는 구금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위 범죄 목록을 제외하고, 그 외에 범죄목록을 위반한

597) 18 U.S.C. Code § 3142

598) 18 U.S.C. Code § 3142

599) 18 U.S.C. § 3142(e)(3)(A)

600) 18 U.S.C. § 3142(e)(3)(B)

601) 18 U.S.C. § 3142(e)(3)(C)

602) 18 U.S.C. § 3142(e)(3)(D)

603) 18 U.S.C. § 3142(e)(3)(E)

대상자는 구금심문(Detention Hearing)을 받아야 한다.⁶⁰⁴⁾

법관은 이절의 ©항에 명시된 조건 또는 조건의 조합이 요구되는 사람의 출석보장과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거쳐야 한다.⁶⁰⁵⁾

가. 구금심문 고려사항

구금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 범죄가 폭력범죄인지, 1591조의 위반사항인지, 연방테러 범죄인지 또는 미성년 피해자나 규제물질, 총기, 폭발물 또는 파괴 장치와 관련된 것인지를 포함하여 기소된 범조의 성격 및 상황⁶⁰⁶⁾ 2) 대상자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⁶⁰⁷⁾ 3) 대상자의 신원정보⁶⁰⁸⁾ 4)성격,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고용여부, 재정 정보, 지역사회의 거주기간, 지역사회 유대관계, 과거행위,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및 과거이력, 범죄이력 및 법원소송에 관련된 기록, 5)(현)범죄 또는 체포 당시 그 사람이 집행유예, 가석방 중이거나 연방(Federal), 주(State), 지역(City)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한 재판, 선고, 항소 또는 형이 끝날 때 까지 석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6) 구금명령서(Detention Order)의 고지내용 등이다.

구금명령서에서 사법관은 1) 사실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및 구금이유에 대한 서면 질술 제공, 2)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거나 복역 중이거나 항소가 계류중인 구금되어 있는 사람과 분리하여 교정시설에 구금하기 위해 범부장관의 구금에 투입되도록 지시, 3) 변호인과의 사적인 상담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 제공 지시, 4) 미국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대상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책임자가 출두할 목적으로 대상인(구금자)를 미국 보안관에게 인도하도록 지시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⁶⁰⁹⁾

604) 18 U.S.C. § 3142(e)

605) 18 U.S.C. § 3142(e)

606) 18 U.S.C. § 3142(e)(1).

607) 18 U.S.C. § 3142(e)(2),(3)

608) 18 U.S.C. § 3142(f)(2).

609) 18 U.S.C. § 3142(i)(1); United States v. Nwokoro, 641 F.3d 108, 109(D.C. Cir. 2011)

나. 석방의 조건

법관이 대상자의 출석조건과 지역사회 안전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나 조건의 조합이 부합된다면 1) 교육이수이행조건⁶¹⁰⁾, 2) 특정조건 부여(거주지, 여행지, 사적모임 제한)⁶¹¹⁾, 3) 관련 증인, 피해자 접촉금지 명령⁶¹²⁾, 4) 지정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정기적 보고 명령⁶¹³⁾, 5) 총기, 마약, 술, 합성제조 약물, 무기 접근금지 명령, 6) 총기, 마약, 술, 합성제조 약물, 무기 사용금지 명령, 7)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8) 특정지역 접근에 대한 세부조건(방문 시간, 기간 등) 부여, 9) 이외에, 특정조건 기재 가능 등을 통해 석방을 할 수 있다.⁶¹⁴⁾

제6절 | 영·미 형사절차법에 대한 소결

국내법의 불심검문⁶¹⁵⁾과 영국의 PACE법령 그리고 미국의 Stop and Frisk(정지 및 수색)법안을 비교분석 및 사례들을 접하면서, 근본적인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관계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 및 미국 같은 경우, 평화로운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통제를 기본으로 범죄예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의 불심검문 같은 경우, 해당 대상자(불심검문 대상자)가 범행의 경중,

610) 18 U.S.C. § 3142(c)(1)(B)(iii)

611) 18 U.S.C. § 3142(c)(1)(B)(iv)

612) 18 U.S.C. § 3142(c)(1)(B)(v)

613) 18 U.S.C. § 3142(c)(1)(1)(B)(vi)

614) 18 U.S.C. § 3142(c)(1)

6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경찰관의 판단이 현 대상자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신고/민원에 의한 불심검문이 아닌 이상, 해당 대상자를 합리적인 사유로만 불심검문이행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내 형사절차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는 미국 또는 영국의 형사법 기준⁶¹⁶⁾처럼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볼 때 현행법 또는 증거와 증언이 명확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이상 임의동행(피의자가 거부시)도 거의 불가능하며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색만 가능하기에 순조로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지만, 영국·미국 같은 경우, 경관의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유⁶¹⁷⁾만 있다면 정지, 질문, 수색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장물 및 금제품의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국 경찰관보다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혐의가 상당한 이유⁶¹⁸⁾를 근거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경관은 해당 대상자를 영장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심검문 같은 경우,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범죄자를 수색한다는 목적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영국/미국 같은 경우, 범죄예방을 원칙으로 잠재적 범죄에 대한 대비를 조치한 후, 피의자 인권문제는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단한 원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꽤 큰 차이점을 두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 피고인의 범죄유무 판단을 우선해 범죄예방보다는 해당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경찰관의 수색 재량권과 체포 권한이 넓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힘든 유죄가 입증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가 힘들다.

616)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인 의심) 혹은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해당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명확하다.

617) 합리적인 의심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이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정지 및 수색이 행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각 사건의 정황사실을 보며 판단한다.

618)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경찰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과 전체적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 체포의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합할 수 있다.

반면에 영국/미국 같은 경우, 범죄예방(잠재적 피해자 보호)을 우선적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 해당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사유만 있다면 해당 용의자를 정지 및 수색을 감행할 수 있고 또한 미국(약 20개주)과 영국 같은 경우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어 해당 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재량권이 넓은 경찰기관의 질문 및 수색기록이 남게 됨으로써 잠재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범죄 관련행위를 미리 저지할 수 있는 효과와 동시에 잠재피해자와 사회적 보호를 우선시하는 이행 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익 및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강력사건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나 경제범죄 사건(중고차 허위매매, 부동산 사기 등)을 접하는 경우 경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함과 동시에 범행에 대한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이행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되려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범죄자들을 참교육(민간인이 범죄혐의가 있는 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보복 및 피해변제를 해결하는 영상)하는 콘텐츠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들은 유튜브 구독자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자를 응징한다는 부분이 통쾌한 부분도 있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은 사회적 통념상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경찰이나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행위영상이 인기를 넘어 일반인들이 관용하기 시작한 부분 역시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보호 및 이익도 중요하지만, 영미법계 국가처럼 경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능론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준법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자가 따로 진행한 국내 경찰관(유**, 경기도 경찰 소속)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고에 의한 불심검문이 대부분이고, 순찰 도중 범죄혐의에 대해 의심스러운 자를 불심검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강력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상황이

면 관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담당부서에서 피혐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심검문 대상자가 수배자가 아닌 이상 체포 및 강제임의동행이 어려우며, 경미한 조사이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특이사항을 기록에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이라 바로 파쇄를 한다. 불심검문의 대상자들은 거의 신고에 의한 현행범이나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자를 확인하는데, 현행범 같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의심이 되는 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질문이외에 다른 조치(수색, 피해자 보호조치, 강제임의 동행 등)를 취하기가 힘들다. 또한 불심검문 요건이 아닌 사람이 아닌 경우, 해당 경찰관에 신고하는 민원 혹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⁶¹⁹)를 한다는 협박에 질문 및 수색 이행과정에 있어 소극적 일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 같은 경우, 범죄가 발생하기 전 조치에 할 수 있는 범죄예방(정지 및 수색) 조치 권한 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흉기에 대한 수색을 제외하고 영장 없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민원에 관련된 불이익(조직 내 입지, 민원조사, 진술서 작성 등)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들이 소극적인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이 공권력 남용 시, 적합한 행정처분 및 불이익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적합한 범죄예방에 있어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과 불공정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우규정 개선과 동시에 적합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지 및 수색(불심검문)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넓혔으면 한다.

619) 해당 경관의 말에 의하면 “민원을 받게 되면 악성민원 혹은 정상적인 민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해당 팀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까지 알게 되고 청문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 5 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수사절차법

승재현 · 이창현 · 조성제 · 최영락 · 국수호

제1절 | 수사절차법의 이론적 검토

1.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개별 조항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의 필요성⁶²⁰, 피의자 체포의 필요성⁶²¹,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⁶²², 압수수색의 필요성⁶²³, 참고인조사 및 감정, 통역 등의 필요성⁶²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기본원칙은 수사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3조에서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⁶²⁵,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⁶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①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620) 「형사소송법」 제200조

621) 「형사소송법」 제20조의2 제2항, 제200조의3 제1항

622)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623) 「형사소송법」 제215조

624) 「형사소송법」 제221조

62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3조 제1항

62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3조 제2항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며, ②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하여야 하고, ③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⁶²⁷⁾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²⁸⁾

2. 수사기관 및 양 기관의 관계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며, 수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협력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⁶²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⁶³⁰⁾

나.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⁶³¹⁾⁶³²⁾

62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3조 제3항

62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3조 제4항

629)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혐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혐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630) 「형사소송법」 제195조.

631) 2022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면서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여기서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에서 동일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 이유에서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청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개정 이유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실제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보다는 넓은 개념이다.⁶³³⁾

다. 사법경찰관 수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⁶³⁴⁾ 또한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⁶³⁵⁾

632) 「형사소송법」 제196조

633)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실제진실의 발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이 명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이송해야 할 것이다. 사건을 다시 받은 경찰이 부랴부랴 다시 동일성 범위 밖에 있는 사건을 새롭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형사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의 또 다른 이념이 ‘적법절차’고 여기에는 피해자의 인권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pingpong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누가 보장하는 것인가? 또 신속한 재판 역시 「형사소송법」의 이념이고, 이는 수사의 신속도 포함되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

634)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635)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

라.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⁶³⁶⁾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⁶³⁷⁾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⁶³⁸⁾

마. 시정조치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⁶³⁹⁾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⁶⁴⁰⁾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⁶⁴¹⁾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⁶⁴²⁾ 사법경찰관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⁶⁴³⁾ 이 때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⁶⁴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636)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637)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63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

639)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64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항

64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

64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4항

643)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

644)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6항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⁶⁴⁵⁾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⁶⁴⁶⁾

바. 수사의 경합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⁶⁴⁷⁾ 검사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⁶⁴⁸⁾

사. 수사기관의 준수 사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⁶⁴⁹⁾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⁶⁵⁰⁾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⁶⁵¹⁾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⁶⁵²⁾

645)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7항

646)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647)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64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

649)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650)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651)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3. 수사의 상당성

가. 합정수사의 입법화 논의 필요성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실제진실의 발견을 위해 진행되는 수사의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방법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수사의 방법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이다. 합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즉 수사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었다.⁶⁵²⁾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으로 합정수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5조의 5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를 규정하면서 ‘합정수사’의 요건을 명문으로 하고 있다.⁶⁵⁴⁾

652)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653) 이창현, 형사소송법, 233면. 이주원, 형사소송법, 114면.

654)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5(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이날로그 시대를 지나 첨단 디지털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재에 언제까지 수사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첨단화 조직화 국제화 되고 있는 범죄의 태양과 더불어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뒤편의 다크웹에서 활개를 치고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수사절차법에 일반규정으로서 '합정수사' 적법성 요건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의 단서

가. 변사자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⁶⁵⁵⁾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⁶⁵⁶⁾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⁶⁵⁷⁾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는 수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절차법에서는 해당 조문이 **사법경찰관으로 주체가 변경되고, '사체해부' 즉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검영장 즉 압수 수색 감정 영장이 필요하다.**⁶⁵⁸⁾

나.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를 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대법원 역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655)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656)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

657)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

658) 이창현, 형사소송법, 235면 참고 부검은 변사자 검시와 다르고, 긴급 검정으로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향후 변사자 검시를 할 때 검시의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시의가 변사 현장에서 사고사인지 아니면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사망 시각 등 기초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⁶⁵⁹⁾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까지 고소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도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⁶⁶⁰⁾

고소권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⁶⁶¹⁾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⁶⁶²⁾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⁶⁶³⁾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⁶⁶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⁶⁶⁵⁾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⁶⁶⁶⁾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⁶⁶⁷⁾

6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6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661) 「형사소송법」 제223조

662) 「형사소송법」 제225조

663) 「형사소송법」 제226조

664) 「형사소송법」 제227조

665) 「형사소송법」 제228조

666) 「형사소송법」 제237조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⁶⁶⁸⁾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⁶⁶⁹⁾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⁶⁷⁰⁾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⁶⁷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동일하다.⁶⁷²⁾ 고소의 취소 방식은 고소 방식과 동일하다.⁶⁷³⁾

다.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⁶⁷⁴⁾ 그러나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⁶⁷⁵⁾ 고발의 방식과 취소는 고소 규정을 준용한다.⁶⁷⁶⁾

라. 자수

자수의 방법 역시 고소의 방법을 준용한다.⁶⁷⁷⁾

667) 「형사소송법」 제236조

668) 「형사소송법」 제230조

669) 「형사소송법」 제231조

670) 「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에서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 규정하고 있지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67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

67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673) 「형사소송법」 제239조

674)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675)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676) 「형사소송법」 제239조

677) 「형사소송법」 제240조

5. 수사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⁶⁷⁸⁾

가. 피의자 신문

1) 의의

피의자 신문(訊問)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⁶⁷⁹⁾

2) 진술거부권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⁶⁸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 하며,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⁶⁸¹⁾

678) 「형사소송법」 제199조

679) 「형사소송법」 제200조

680)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68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3) 피의자 신문 및 신문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⁶⁸²⁾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⁶⁸³⁾

6. 피해자 보호 조치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 규정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 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지휘한 사건이 송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통지 방식은 통지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다.⁶⁸⁴⁾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건진행상황과 수사의 종결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⁶⁸⁵⁾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에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①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②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시에는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

682) 「형사소송법」 제241조

683) 「형사소송법」 제242조

684) 「대검예규」 제909호, 제3조-제4조

685) 「범죄수사규칙」 제203조-204조

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⁸⁶⁾ 또한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17조, 제18조).⁶⁸⁷⁾

피해자는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증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⁶⁸⁸⁾ 또한 피의자 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⁶⁸⁹⁾

나. 피해자 보호조치

범죄피해자보호⁶⁹⁰⁾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⁶⁹¹⁾ 먼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범죄피해자보호원칙(동규칙 제20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동규

686)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687)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688) 「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3조 1항

689) 「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11조 1항, 2항

690)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0조 1항, 2항).

691) 「범죄수사규칙」 제11장

칙, 제20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규칙, 제20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동규칙, 제204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조),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동규칙, 제20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규칙, 제206조 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절 | 수사절차법(초안) : 단계 1

1. 수사절차법 초안을 미리 만든 이유

연구자는 2022년 10월 수사절차법 초안을 만들었다.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및 각종의 수사관련 예규를 다 일일이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법규화 해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을 경찰관계자, 검찰관계자, 변호사, 학계(경찰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에게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1월에 받기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피드백을 통해 보다 결론에 수사절차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연구방법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마지막에 법안을 만들어 연구결과로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없다는 생각에 본 연구에서는 수사절차법 초안을 만들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정교한 수사절차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밝혀 둔다.

2. 수사절차법 초안

제1편 통칙

제1장 수사의 원칙

제1조(수사의 기본 원칙)

- ①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검사의 수사)

-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4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수사요구)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6조(시정조치요구 등)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수사의 경합)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특례

제9조(신분위장 수사)

- ① 수사기관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분위장 수사 절차 등)

- ①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찰은 대검찰청, 경찰은 상급 기관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긴급 신분위장수사)

- ① 수사기관은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2조(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신분위장 수사 비밀준수 의무)

- ①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면책)

- ①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단서

제15조(변사자 검시)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

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17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18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조(고소의 방식)

-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5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6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7조(고소의 취소)

- ① 고소의 취소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②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9조(고발의 제한)

제17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30조(고발의 방식 등)

고발의 방식 및 취소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조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2조(직무질문)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임의수사

제33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및 강제수사 유의사항)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④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34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피의자신문 사항 및 방법)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변호인의 참여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41조(수사과정의 기록)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심야조사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휴식시간 부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참고인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47조(증인신문청구)

-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참고인의 증인신문청구는 제22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수정 필요)

제48조(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수사준칙 규정)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수사기관의 신문 또는 피해자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감정·통역·번역 위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51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청구) 강제수사에 편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전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①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3조(사실조회)

- ①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56조(영장에 의한 체포)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

- ①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58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촉탁)

-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59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①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체포영장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전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63조(체포영장 집행 후의 절차)

- ①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체포된 피의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64조(체포 후의 조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65조(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66조(긴급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7조(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긴급체포 후의 조치)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긴급체포 집행 후의 절차)

긴급체포 집행 후의 절차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70조(긴급체포 후의 조치)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72조(수사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수사기관 체포 및 인도 후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76조(현행범인 체포 후 조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77조(구속의 사유)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8조(구속 영장 청구)

- ① 제7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79조(구속영장의 방식)

-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구속전피의자 심문)

- ① 제56조·제65조·제7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전피의자신문 방법)

-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82조(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있어 신뢰관계자 동석)

- ① 판사는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방법)

- ①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閏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있어서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등)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있어서 공판조서의 기재 및 서명 등은 「형사소송법」 제51조, 53조를 준용한다.

제85조(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있어서 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있어서 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를 준용한다.

제86조(미체포 피의자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87조(미체포 피의자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방식)

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방식은 78조를 준용한다.

제89조(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 등)

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은 제88조, 제89조, 제90조를 준용한다.

제90조(구속영장의 집행)

-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91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92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4조(구속과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구속 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9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97조(구속의 통지)

-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8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9조(변호인의 의뢰)

- ①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101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102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103조(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구속기간의 연장)

-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9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재구속의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10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⑥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⑧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⑪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7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 ①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재판장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④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108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조건)

법원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의자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받아들일 것
10.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109조(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 ① 법원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 ②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10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절차)

- ① 제99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

- 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2조(보증금의 몰수)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 ② 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12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①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②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13조(구속의 집행정지)

- ①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14조(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청구 및 신청)

-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15조(영장의 방식)

-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 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116조(영장의 집행)

-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②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17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8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19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0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5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6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7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28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9조(우체물의 압수)

- ①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3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3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3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수색)

- ①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해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35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6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압수 등의 조서)

- ①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41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의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 환부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환부불능과 공고)

-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4편 수사의 종결

제1장 통칙

제144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제145조(검사의 결정)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증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6조(수사 결과의 통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4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1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7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① 제14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1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46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1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제148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혐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14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9조(사건기록의 등본)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150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제151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2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① 제146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① 검사는 제151조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형사소송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4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4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제155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156조(재수사요청 등)

- ① 검사는 제151조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157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① 검사는 제15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51조

제2호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51조 제2호에 따라 송부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51조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① 사법경찰관은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1조 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9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제3절 | 수사절차법 초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가. 들어가며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큰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등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고 그 대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좁은 의미로 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절차인 공판절차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공소제기 이전 단계인 수사절차와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인 형집행절차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과 집행절차까지 모두 규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절차에 한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의 입안 노력이 나타나서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피면서 검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종합적 평가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만 있고 이후 상세한 부분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률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법무부령, 경찰수사규칙과 같은 행정안전부령, 형사소송규칙과 같은 대법원규칙 등에 나누어져 있으며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하여 수사기관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더구나 법률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실정입니다.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위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수사 관련 규정들을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절차법만으로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확인하고 지침이 될 수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입법모색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을 공판절차와 같이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형확정시까지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상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무렵에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편제를 따르다보니 지금까지도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중심으로 규정한 후에 수사기관에서의 강제처분에서는 앞의 법원의 강제처분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는 바람에 많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⁶⁹²⁾ 예를 들어, 실제 압수·수색·검증은 거의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제106조부터 제145조까지 사이에 법원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수사기관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은 제215조부터 제218의 2까지 불과 5개 조문에 불과하고, 제219조에서 제106조부터 제145조까지의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사절차법에서 수사기관의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수사절차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692)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21, 238면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의 순서는 직권주의적 독일의 편제에 따른 것으로서 법원의 진실규명활동에 초점을 맞춘 법원중심적인 조문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사를 제1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의 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 검토

수사절차법은 제1편 통칙, 제2편 수사, 제3편⁶⁹³⁾ 수사의 종결로 나뉘고, 제2편은 다시 제1장 수사의 단서, 제2장 임의수사,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간결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제3조(검사의 수사)

제2항에서 제197조의3 제6항 등은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인데, 수사절차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97조의3 제6항은 제6조 제6항으로, 제198조의2 제2항은 제8조 제2항으로, 제245조의7 제2항은 제152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조문 바로 앞에 ‘형사소송법’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제4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제2항에서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 있으나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신분위장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37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사법경찰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에 참여만 하고 그 외 수사와 관련된 업무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실제 경찰공무원 중에서 사법경찰리의 비중이 매우 높고 실제 수사역량을 크게 발휘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등 현실적인 업무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가능하면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10조(신분위장 수사 절차 등)

제1항에서 ‘~~ 검찰은 대검찰청, 경찰은 상급 기관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으로 한정하면서 경찰은 단순히 상급 기관

693) 수사절차법 42면에 제4편으로 기대되어 있는 것은 제3편의 오기로 보입니다. 또한 45면의 제2절은 제2장의, 47면의 제3절은 제3장의 오기로 보입니다.

수사부서로 한 것은 균형상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경우에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며 대검찰청의 장은 결국 검찰총장이므로 오히려 경찰의 경우와의 균형을 위해 검찰의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고 규정하여 이증으로 승인과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너무 큰 제약이 되므로 신분위장수사의 성격상 법원의 허가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에 이미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4항에서 '제5조 제1항의 요건' 부분에서 제5조가 수사절차법의 제5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률이 있다면 그 앞에 해당 법률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제11조(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항에서 '~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수사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48시간'은 법원에 청구하는 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⁶⁹⁴⁾ '~ 검사의 허가청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한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한 경우에 사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694)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17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2조(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1호와 제2호 등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 대상자가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의 사용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서의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수사범위가 제한된 바가 없고 이에 따라 통상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사범위와 수집한 증거 등의 사용범위가 같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23조(고소의 방식)

제2항에서 '~ 고소 또는 고발을~'에서 고발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규정되고 있으므로 고발부분을 삭제하여 '~ 고소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27조(고소의 취소)

제1항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취소의 방식에 있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에서의 고소는 그 성격과 제4항에서의 준용규정에 의하면 친고죄의 고소임을 알 수 있으나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과 제3항에서의 '고소'를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로 분명히 한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32조(직무질문)

제32조의 직무질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에 있는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불심검문이란 용어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감청'에 대한 부분도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별법에 있는 것을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위치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규정 이후인 제143조 바로 다음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41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항에서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이고, 같은 내용이 제40조 제2항과 제3항에 있으므로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43조(심야조사 제한),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와 제45조(휴식시간 부여)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각 제1항에서 '사건관계인'이란 용어가 계속 나오고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와 동일하지만 사건관계인은 실제로 참고인에 해당하고 제46조 등에 참고인이란 용어와의 통일을 위해서도 '사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심야조사 제한 등의 규정은 피의자신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지켜야 할 내용이므로 피의자신문 규정 중에 두는 것 보다는 임의수사의 총칙규정으로서 제33조와 제34조 사이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49조(참고인과의 대질)

위 규정을 제46조의 '참고인 조사' 규정 중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신문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피의자신문 규정 중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51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청구)

감정유치는 대인적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위 규정의 제명을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청구'에서 간단하게 '감정유치'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 제55조(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1항에서 '제245조의2 제1항'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해당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제54조 제1항'에 있으므로 '제245조의2'를 '제54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과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강제처분은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⁶⁹⁵⁾ 그리고 제2장의 임의수사와의 용어사용의 균형을 위해서도 '대인적 강제처분'을 '대인적 강제수사'로, '대물적 강제처분'을 '대물적 강제수사'로 각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56조(영장에 의한 체포)

위 조문의 제명이 '영장에 의한 체포'이기에 당연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장에는 여러 종류의 영장이 있으므로 체포영장으로 특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제명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항에서 '제200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해당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제34조'에 있으므로 '제200조를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59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체포 아니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맥이 어색하므로 '~~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⁶⁹⁶⁾

○ 제61조(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위 규정 서두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이라고 고지의 주체를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제59조와 제60조에서는 그 주체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60조 제1항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이라고 하고 제61조에서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같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표현을 같게 하고, 이에 따라 제60조와 제61조를 합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695)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304면에 의하면 '강제처분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본다.

696) 개인적으로는 '체포하지 않거나'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위의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63조(체포영장 집행 후의 절차)

제1항과 제5항의 '피고인'은 '피의자'의 오자이니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64조(체포 후의 조치)

'제201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해당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이 '제77조'에 있으므로 '제201조'를 '제77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65조(긴급체포)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보면 '도망한 때'는 있으나 '증거를 인멸한 때'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망한 경우와의 균형상 제1호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염려'와 '우려'가 사실상 같은 의미이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66조(긴급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체포는 긴급체포에 해당하므로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위의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1조와 제66조, 그리고 제72조(또는 제74조)가 체포의 종류만 다르고 공통적으로 체포시의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으로 같으므로 위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69조(긴급체포 집행 후의 절차)

‘제62’는 ‘제63조’의 오자로 보이니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70조(긴급체포 후의 조치)

제1항 1줄에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64조는 제65조의 오자이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로 한다면 위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부분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항 5줄에서 ‘제67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오자로 보입니다.

○ 제71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개념을 밝히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내용이 없어서 현행범인체포에서 실무의 혼란이 예상되니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긴급체포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이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범인체포에 있어서는 긴급체포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 또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설로 ㉠ 구속사유필요설은 현행범인체포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사안의 긴급성 때문이기에 긴급체포와 같이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이고,⁶⁹⁷⁾ ㉡ 구속사유불요설은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체포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구속사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⁶⁹⁸⁾ ㉢ 절충설은 현행범인체포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신원이 불분명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수사 확보를 위해 혐의자의 행동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제도이기에 도망의 염려는 필요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⁶⁹⁹⁾ 판례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

697) 신동운, 『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14, 325면;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6판)』, 법문사, 2022, 196면; 최호진, 『형사소송법강의』, 준커뮤니케이션즈, 2019, 162면.

698) 김재환,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146면; 이은모/김정환, 앞의 책, 253면; 이승호/이인영/심희기/김정환, 『형사소송법강의(제2판)』, 박영사, 2020, 149면; 이재상/조균석/이창은, 『형사소송법(제14판)』, 박영사, 2022, 172면; 정용석/최창호/이경렬/김한균,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152면.

699)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128면.

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구속사유필요설의 입장이 분명합니다.⁷⁰⁰⁾ 판례는 구속사유필요설의 입장이지만 다수 학설은 구속사유불요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본다면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범죄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체포가 상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700)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피고인이 A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A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데 화가 나서 손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B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칠 당시 B는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B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원심은 검찰수사관이 제보받은 바지선 내부를 수색하여 숨어있던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현장을 수색하여 찾아낸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고 보고 체포 당시 필로폰 밀수범행의 증거인 필로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첩보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요건 중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바지선에 승선하여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수사관이 바지선 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보아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②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 피고인의 모욕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④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 제72조(수사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와 제74조(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와 피의자실 등의 고지)

위 규정들은 제명이 조금 다르고 그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같은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위의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고, 제66조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체포의 종류만 다르고 공통적으로 체포시의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으로 같으므로 위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77조(구속의 사유)

제1항 제3호에서 '피의자가 도망한 때'는 있으나 제2호에서 '증거를 인멸한 때'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망한 경우와의 균형상 제2호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78조(구속 영장 청구)

제명이 '구속 영장 청구'로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상 '구속영장청구와 발부 여부 결정'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제1항에서 '제76조'는 '제77조'의 오키로 보입니다.

○ 제79조(구속영장의 방식)

제1항에서 '피고인'은 '피의자'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사실의 요지'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지방법원 판사'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에서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81조(구속전피의자신문 방법)

제명에서 '구속전피의자신문 방법'은 '구속전피의자심문 방법'의 오키입니다.

- 제82조(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있어 신뢰관계자 동석)
제1항에서 '피고인'과'는 '피의자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83조(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방법)
제명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으니 재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 제88조(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방식)
'78조'를 '제79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89조(미체포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 등)
'제88조, 제89조, 제90조를 준용한다'고 하는데, 어느 법률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제89조를 준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수사절차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오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제90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항에서 '검사의 요청'은 '검사의 지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항에서도 '검사의 지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먼저 제91조 다음은 제92조인데 제83조라고 기재되어 오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요청'은 '지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92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구속영장과 관련된 조문이 계속되다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나 '체포 또는 구속'이 함께 규정되는 것은 조문편제상 어색하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94조(구속과 피의사실 등의 통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위의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60조와 제61조를 합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제93조와 제94조를 합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95조(구속 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항 본문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제1호에서 '다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라고 다시 반복되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다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부분을 삭제하고 문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체포현장'을 '구속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제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이므로 범죄장소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97조(구속의 통지)

'피고인'은 '피의자'로, '피고사건명'은 '피의사건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98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와 제99조(변호인의 의뢰)

모두 '피고인'을 '피의자'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00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먼저 '피고인'을 '피의자'로 수정하고 '제34조에 규정함'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제34조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호인을 제외한 제3자와의 접견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91조와 내용이 같으며, 위 제91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인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09조에 의해서 위 9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91조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학설로 ① 수사기관결정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피의자 체포), 제209조(피의자 구속)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⁷⁰¹⁾ ㉔ 법원결정설은 위 조문들은 공판절차에서 행해지는 피고인 구속의 관련 조문들을 수사절차에서 행해지는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에 준용하기로 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⁷⁰²⁾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원에서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의 강제처분에서 준용하는 바랍에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논쟁이 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현재 수사기관결정설과 같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⁷⁰³⁾ 결국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⁷⁰⁴⁾

○ 제103조(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에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은 뒤에 ‘체포 또는 구인’에 의해서 사실상 중복되고 의미가 없어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으며,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에서 ‘는’부분을 삭제하여 그냥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로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04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항에서 ‘제93조’를 ‘제102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0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항에서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33조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701)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제4판)』, 성균관대 출판부, 2015, 218면;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앞의 책, 194면; 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22, 159면; 이창현, 앞의 책, 374면; 임동규, 앞의 책, 221면; 정용석/최창호/이경렬/김한균, 앞의 책, 170면.

702) 신양균/조기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2, 179면; 이은모/김정환, 앞의 책, 283면.

70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704) 이창현, 앞의 책, 374면과 임동규, 앞의 책, 221면에 의하면 입법론으로는 수사목적을 위해 접견교통권 제한이 남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이기에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07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

제1항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때에만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현행법의 해석과는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4항에서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는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08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의 구속피고인과 같이 구속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오로지 보증금납입조건으로만 석방할 수 있기에 역시 현행법의 해석과는 맞지 않습니다.

○ 제110조(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절차)

제1항에서 ‘제99조’는 ‘제108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12조(보증금의 몰수)

제1항 제1항에서 ‘제214조의2 제5항’은 ‘제108조’로, ‘제214조의3 제2항’은 ‘제112조 제2항’으로, 제2호에서 ‘제214조의2 제5항’은 ‘제108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에서 ‘제214조의2 제5항’은 ‘제108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12조(보증금의 몰수)

먼저 앞의 조문과 번호가 일치하니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제1호에 ‘증거를 인멸한 때’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13조(보증금의 몰수)

제1항에서 '검사는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결정으로 석방할 수 있으므로(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6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항에서도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위와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 제1항 제5호 참조). 법원의 사법통제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제115조(영장의 방식)

제1항에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를 '지방법원 판사가'로 수정하고, 제1호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피의자의 성명'으로, 제2항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제116조(영장의 집행)

제2항과 제3항에서 '구속영장'을 '압수·수색영장'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제117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5조와 제116조, 그리고 제117조 제1항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 제2항과 제3항에서 갑자기 검증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색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120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피고인'은 '피의자'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제134조(수색)

제1항과 제2항은 사실상 제114조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삭제 등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138조(증명서의 교부)

내용을 보면 수색증명서로 짐작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의 '증명서의 교부'를 '수색증명서의 교부'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 제141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3항에서 '피고인'은 '피의자'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 제146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과 '검사에게 ~~' 사이에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부분을 삽입하면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153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1항에서 '검사는 제151조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인 송치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2022년 5월 9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 되고(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② 검사는 사건송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6항)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제196조 제1항)는 내용이 신설되어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도 수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건송치요구 등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차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54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서 '히행한'은 '이행한'의 오자입니다.

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 사용

2020년 12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제35차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7572호)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37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형사소송법과 판례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의 어색한 표현이 적지 않고⁷⁰⁵⁾ '제197조의3제6항'⁷⁰⁶⁾ 등과 같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법조문이나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자연스런 어법의 표현으로 바뀌고 있기에⁷⁰⁷⁾ 수사절차법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5) 20면의 제56조 제2항. 예를 들어, 14면의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706) 3면의 제3조 제2항. 관하수사관서(7면의 제8조 제1항).

707) 13면의 제34조는 위 수사준칙 제19조와 같은 내용인데, 제1항 제4호가 기존에는 '아니할 것'이라고 표기되지만 수사준칙에서는 '않을 것'이라고 표기되고 있고, 16면의 제44조는 위 수사준칙 제22조와 같은 내용인데, 기존의 '아니하도록'이 아니라 '않도록'으로 표기되고 있다.

마. 이창현 교수의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한 의견

검경수사권조정 의 여파로 인해 특히, 경찰의 수사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되고 있고, 아직 변화된 수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사역량이 떨어지고 사건해결은 더욱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을 모두 종합하여 수사절차라는 매우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는 업무는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고 많은 노력과 열의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은 실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외에도 사법통제를 맡고 있는 법관은 물론 피의자, 피해자 등 수많은 관계인에게 엄청난 이해관계를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수정작업을 통해 절대 다수 국민에게 환영받는 수사절차의 길잡이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2.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성제 교수의 견해

가. 수사절차법 일반적 평가

- 1) 신뢰관계자의 동석에 관한 현 형사소송법규정을 원칙규정으로 유지(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또한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163조2 제1항-제3항).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규정 유지(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3-125조)의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통지 규정 유지 및 추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59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서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수사절차법에 규정 신설⁷⁰⁸⁾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통지 방식은 통지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다(대검예규 제909호, 제3조-제4조).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 있는 자의 조력을

708) 대검찰청 예규,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등에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 관련 규정을 수사절차법에 신설 필요

받을 권리 등)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건진행상황과 수사의 종결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03조-204조).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①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②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시에는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17조, 제18조).

5) 수사 중인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신설⁷⁰⁹⁾

피해자는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증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3조 1항, 2015. 12. 31). 또한 피의자 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709) 대검찰청 예규에 있는 수사중인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규정을 수사절차법에 신설 필요

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대검찰청 예규 831호 제11조 1항, 2항, 2015. 12. 31).

6)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신설⁷¹⁰⁾

범죄수사규칙은 제11장에서 범죄피해자보호⁷¹¹⁾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경찰청 훈령 858호, 2018. 1. 2). 먼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범죄피해자보호원칙(동규칙 제20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동규칙, 제201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동규칙, 제20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동규칙, 제203조),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동규칙, 제204조),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동규칙, 제205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동규칙, 제20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동규칙, 제206조 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의 근거 규정 신설⁷¹²⁾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한된다.⁷¹³⁾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게 법률적 구조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⁷¹⁴⁾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그 자체로 인한 고통,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외감과 무력감

710)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 중 중요내용의 수사절차법 신설 필요

711)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0조 1항, 2항).

712)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의 근거 규정을 수사절차법에 신설 필요

713) 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법학논고, 2019, 156면 참고

714) 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법학논고, 2019, 156면 참고

등은 성폭력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의 피해자도 겪게 되는 것이다.⁷¹⁵⁾ 그러한 면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⁷¹⁶⁾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가능성, 형평성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둘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유의 기준에 준하는 범죄피해자 셋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넷째,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⁷¹⁷⁾ 다섯째,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한 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자 등이다⁷¹⁸⁾

나. 수사절차법에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

1) 변호인의 참여(제38조 1항)의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으로 규정 필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원칙적 보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제38조 1항) 수사절차법에 규정 필요

검찰사건사무규칙⁷¹⁹⁾에서 변호인의 참여 제한과 관련하여, 제9조의 2에서 ‘정당한

715) 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법학논고, 2019, 156면 참고

716) 조성제,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법학논고, 2019, 156면 참고

717)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고의로 사람을 사상시킨 죄, 강제추행·강간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의 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해당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신청을 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33 제1항).

718) 김재중·김좌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법학연구 제41권,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4: 190면).

719)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 2008.1.7, 법무부령 625호)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

사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i)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ii)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iii)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v)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함)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참여권 제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주요한 내용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방해와 수사기밀누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피의자신문방해에 대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1호, 2호) i)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ii)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는 개정 형사소송법상(제243조의2 제3항)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피의자 신문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극적인 피의자 신문방해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되는 제9조의2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항 3호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즉 변호인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신문이 부당하지 않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일 것이고 결국 어떤 신문이 부당한 신문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신문방법이 부당한 신문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법절차 준수에 의한 실제진실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실무나 판례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있어서의 부당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변호인의 참여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통상체포 요건 규정의 완화

통상체포 사유인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규정 삭제할 필요가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제200조의2 제1항).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포를 전제로 하는 체포전치주의의 입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체포의 요건만 구비된 경우에는 먼저 체포를 하여 그 이후에 구속을 행하는 방법과 구속요건에 해당함이 명확하여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는 때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어서, 그 죄란 구체적이고 특정한 범죄를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결합을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체포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이들을 체포사유로 하고 있다고 보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수사초기에 있어서 신병확보 수단인 체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체포사유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 입법론 보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체포제도는 단기간의 신병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체포제도의 완화된 운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출석불응과 출석불응의 우려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국선변호의 확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구속전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 201조의 2 제9항)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 2 제10항)에 있어서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의 피고인의 자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형사피고인'도 굳이 문리적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상의 적법 절차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⁷²⁰⁾

3. 최영락 변호사의 견해

가. 추가를 고려해 볼 만한 조항

1)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의 제정 목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20) 같은 뜻: 변종필,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사회변동과 한국의 형사법학, 한국 형사법학회 창립50주년 기념학술대회(2007.6.22), 한국형사법학회, 90면.

2) 적용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주체, 수사 단계 등에 따른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나.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 1조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와 동일한 구체적 내용(특히 3항 등)을 법률에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
- 1조 수사의 기본원칙에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같이 준수사항 등의 제목 아래 규정함이 바람직

○ 9조~14조

-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영장에 준하는 새로운 수사 방법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신중을 기할 필요
- ‘신분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가 별개의 개념인지, 그렇다면 ‘신분위장수사’와 별도로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정의규정 필요(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제14조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위장수사가 위법 또는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면책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32조

- 직무질문은 질서유지 등 단속적 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의 하나로 위치시키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33조

- 법률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같이 임의수사 원칙을 선언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 초안 2, 3, 5항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4조

- 현재 초안은 출석요구 시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200조와 같이 출석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규정함이 필요함
- 33조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같이 출석요구의 근거 마련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초안 34조 정도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5조, 36조

- 두 조항의 순서를 서로 바꾸거나 한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43조~45조

- 법률에서 규정할 내용으로는 다소 구체적이나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함을 고려할 수 있음

○ 56조~76조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체포 종류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음. 즉 피의사실

- 등의 고지(61조, 66조, 74조), 체포 후의 조치(64조, 70조, 76조) 등의 규정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모든 종류의 체포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면 통합해서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조문 체제 차원에서 정리해 볼 필요 있음
-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관련하여 62조, 67조를 통합하여 일괄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이 부분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89조

- 준용 조문으로 기재한 88조, 89조, 90조에 대한 확인 필요

○ 대물적 강제처분 관련

- 성질상 강제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필요 있음(형사소송법 218조 참조)
- 근래 수사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27, 12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시의적절함
- 특히 관련성 존부, 구체적 압수방법, 절차에 대해 최근 관련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계속 법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 법리를 조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함
- 즉, 초안 역시 판례 법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성의 구체적 의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시 특히 요구되는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조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수사의 종결 부분 관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법률 단계에서 정할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법률과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4. 경찰청 수사연구관의 국수호 경정 의견⁷²¹⁾

가. 개요

수사절차법 법률 조문안은, 수사기관 및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사의 흐름대로 수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구성하고, 특히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첨언할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⁷²¹⁾ 이하 검토의견의 내용은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제1편 통칙, 제2편 수사, 제3편⁷²²⁾ 수사의 종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편'을 특칙 정도로 구성하여 그동안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배에 관한 사항, 수사기관 간 공조에 관한 사항(국제공조 포함), 신분위장수사 등을 규정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수사절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만을 규율할 것인지, 공소제기 후의 수사도 포함할 것인지, 공소제기 후의 수사도 포함한다면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와 나누어서 규정할 것인지, 같이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수사라면 특히 그 수사대상자를 '피의자'로 지칭해야 할 것이고, 공소제기 후라면 '피고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압수 등 규정을 수사절차에 준용하였던 기존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 개별적 조문에 대한 의견

○ 1조(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 수사기관의 의무 등을 설시하기 전에, 이 법률의 기본목적, 적용범위 등을 선언하는 조항이 1조에 규정되어 있으면 더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며 각 수사기관의 효율적 협력관계와 수사에 있어 효율성이 적법절차 원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 제4항~제7항까지의 내용은 별건자백강요금지, 불구속 수사원칙, 인권존중·비밀엄수 등, 수사목록작성의무인데 각각이 서로 다른 적용범위를 가지는 내용이므로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3조(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는바, 수사절차법에서 각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722) '제4편'으로 되어있는데, '제3편'으로 바뀌어야 할 듯 합니다.

준다는 측면에서 위 검찰청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을 수사절차법 조항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제2항 관련하여,(형사소송법이 아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검사는 제6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52조제2항에 따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4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 사법경찰관(경위 이상)과 사법경찰리(경사 이하)의 구분은 현행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조항으로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제1항의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행 경찰법 등 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는 이들의 수사지휘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도 당연히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5조(보완수사요구), 제6조(시정조치요구 등), 제7조(수사의경합)에 대하여

- 이들 조항은 수사의 원칙(제1편 제1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3편(수사의 종결)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제5조제3항, 제6조제7항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상호 협력해야 하는 두 기관의 관계(제2조 제1항 등)를 고려하면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법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른 국가기관의 징계요구권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4항)을 활용하면 되므로, 수사절차법에 별도로 따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8조(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에 대하여

- 이 조항은 수사의 원칙(제1편 제1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다른

편장에 구성하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9조~14조(제2장 수사특례)에 대하여

- 제1편 통칙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수사의 원칙 다음에 구체적인 수사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4편'을 특칙 정도로 구성하여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특례(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는 그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범위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이러한 수사방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를 통제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은 본 수사절차법 조문안 제10조제3항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것이 인권보장에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10조제1항에서 '신분비공개수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앞선 제9조 등에서 이에 대한 언급(정의)이 없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규정의 내용을 언급하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5조~32조(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단서)에 대하여

- 이 부분은 수사를 '개시'하는 부분에 대한 규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건전 조사(소위 '내사')에 관한 규정을 이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입건전 조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수사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수사절차법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16조, 경찰수사규칙 제19~20조에 입건전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제15조(변사자 검시)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사자 검시도 경찰에서 거의 모든 수사를

-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의 주체적인 검사·검증 권한을 규정하고 검사의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제20조(고소권자의 지정)는, 국민들이 좀 더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소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22조(고소의 제한)는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많다는 점, 실무적으로 고발 또는 진정의 취지로 선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29조(고발의 제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35조의 내용과 취지를 인용한 것이라면, “제22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라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제32조(직무질문)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내용인데, 수사의 단서로써 직무질문이 기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제상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질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수사절차법상 수사의 단서로 규정하게 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불심검문)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질문(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써의 기능도 있지만 전형적인 경찰의 행정작용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상의 직무질문의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해석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수사절차법 조항 중 제33조 제5항도 그러한 의미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32조의 내용을 그대로 구성하더라도,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도의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양자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2조제4항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경찰관이 대규모 인파관리 등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직무질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직무질문을 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아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취지로 판시하

고 있습니다(2014도7976). 따라서 이 조항도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복을 입는 등 주위사정에 비추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장 임의수사

○ 33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및 강제수사 유의사항) 에 대하여

- 제4항은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공무원 소 기타 공사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단서로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밀한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제5항은 앞서 언급한대로 제32조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에 대하여

-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3항 정도로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했는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는 통상적인 시간 동안 수사기관이 신문을 미루고 기다려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더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면 투명한 수사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37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에 대하여

- 피의자 신문에 있어 인권보장 등 측면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현재의 수사현실과 괴리되는 측면도 있는 조항이어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청수사관 등이 참여하여 신문의 내용과 방법이 인권침해적인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인력,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피의자 신문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를 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상녹화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신문에 있어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여’의 의미와 목적, 구체적인 방법(신문을 직접 하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인 신문방법을 제지하는 의무부여 등)을 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41조(수사과정의 기록) 에 대하여

- 제2항 관련하여,(형사소송법이 아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44조(장시간 조사 제한) 에 대하여

- 제1항 제2호 관련하여,(형사소송법이 아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47조(증인신문청구) 에 대하여

- 증인신문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신청권도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사의 95%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증인신문청구의 필요성도 경찰이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하의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3항 이하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인용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의 증인신문 신청권을 규정한다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6항은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1조~52조(감정, 감정위촉, 감정유치 청구 등) 에 대하여

- 51조, 52조의 내용은 강제수사의 내용이지만, 제50조를 감정위촉 규정으로 구성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으로 51조, 52조가 뒤따르는 것도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53조(사실조회) 에 대하여

- 제33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4조~55조(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에 대하여

-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 56조(영장에 의한 체포) 에 대하여

- 제1항에서, '제200조'가 언급된 부분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34조'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57조(체포영장의 집행) 에 대하여

-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실무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형식적·장식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실무적으로는 영장 원본에 검사의 집행지휘 도장만 찍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만약 필요하다면, 검사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의 지휘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영장이 법원에서 검찰로 발부·전달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장집행에 있어 검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면 지휘라는 개념 대신에 '촉탁' 정도의 개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60조(체포영장의 집행절차) 에 대하여

- 제1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및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정본'보다는 '원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낫을 듯 합니다.

○ 63조(체포영장 집행 후의 절차) 에 대하여

- 제1항에서 언급되어 있는 '변호인선임권자'는 구성되어 있는 수사절차법 조문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64조(체포 후의 조치) 에 대하여

- '제201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78조'로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 66조(긴급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에 대하여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61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긴급체포하는 경우'로 문구를 추가수정하거나,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69조(긴급체포 집행 후의 절차) 에 대하여

- 긴급체포는 '집행'한다는 개념이 어색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후의 절차'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62조'는 '제63조'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70조(긴급체포 후의 조치) 에 대하여

- 제1항에서, '제64조'는 '제65조'로 수정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제3항에서 '체포'의 의미가 '긴급체포'를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히 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74조(수사기관의 현행법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에 대하여
 -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61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행법 체포하는 경우’로 문구를 추가수정하거나,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79조(구속영장의 방식) 에 대하여
 - ‘피고인’을 ‘피의자’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또는 피의사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80조(구속전피의자 심문) 에 대하여
 - 제3항, 제4항은, 경찰관의 심문기일 출석권, 의견진술권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속피의자의 대부분이 경찰이 진행한 사건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경찰이 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81조(구속전피의자신문 방법) 에 대하여
 - 제7항은, 그 내용이 판사의 일반적인 법정지휘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 87조(미체포 피의자 구인 후의 유치) 에 대하여
 - ‘피고인’을 ‘피의자’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90조(구속영장의 집행) 에 대하여
 - 제1항은, 영장집행에 있어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제57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57조와의 통일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 93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에 대하여
 - 제1항, 제2항에서 ‘피고인’은 ‘피의자’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또는 피의사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 95조(구속 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에 대하여

- 제1항 제2호는, 삭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96조(호송 중의 가유치) 에 대하여

- 경찰서 유치장도 포함시키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4장 대인적 강제처분

○ 116조(영장의 집행) 에 대하여

- 제1항은, 영장집행에 있어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제57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57조, 제90조와의 통일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제2항, 제3항은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129조(우체물의 압수) 에 대하여

- 제3항 단서는, '심리'를 '수사진행'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제4편 수사의 종결

○ 145조(검사의 결정) 에 대하여

- 제1항 제5호의 보완수사요구는, 현행 수사준칙 내용과 같습니다만,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153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에 대하여

- 제1항과 관련하여, 제3조, 제5조에서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 등의 내용은 같은 법률안에 있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의 체계와 같이 제1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

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책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 관련 사항은 그 주요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6 장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결론

승 재 현

제1절 | 수사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1.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

가.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입장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해 시민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은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소송구조가 변하면서 행정부(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사는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법작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수사단계에서 준용하고 있다. 수사를 사법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자칫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재량 혹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가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사를 행정작용으로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

나. 수사절차는 기소·공판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

수사는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해 국가기관인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작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절차만 규정하는 법률 제정한다면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작용으로서 재판에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상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수사절차를 두고 있고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절차법 제정에 신중한 판단해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산재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현재 초래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불편은 수사 절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밀어 붙이기 위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를 분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여러 수사절차 규정들은 각 기관의 독자적인 존재이유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수사절차법에서 이러한 모든 규정을 하나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공판단계의 강제 처분 규정이 수사단계에 준용되는 현 형사소송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 규정을 살펴보면 수사절차의 특유성을 보장하되 공판단계의 강제처분을 준용하고 있다. 수사 절차를 사법작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수의 준용규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지 않아 수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절차에 강제수사와 관련된 조문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마. 경찰의 재량권이 현재 보다 넓어져야 하며, 공공의 안녕 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영국 및 미국 같은 경우, 평화로운 사회적 공존에 필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제를 기본으로 범죄예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당한 이유’는 미국 또는 영국의 형사법 기준⁷²³⁾처럼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 또는 증거가 명확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이상 임의동행(피의자가 거부 시)도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관 직법집행법 상 흥기의 소지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안전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지만 영국·미국 같은 경우, 경찰관의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유⁷²⁴⁾만 있다면 정지, 질문, 수색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장물 및 금제품의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찰관보다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혐의가 상당한 이유⁷²⁵⁾를 근거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경찰은 해당 대상자를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줄 당겨 주세요)이러한 점에서 현재 형사소송법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을 인정하는 절차법이 요구된다.

바. 수사절차법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관련 증거법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⁷²⁶⁾ 또한 수사절차 관련 규정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인적 혹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더욱더 복잡하게 되었다.

723)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 Reasonable Suspicion(합리적인 의심) 혹은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해당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명확하다.

724) 합리적인 의심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이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정지 및 수색이 행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각 사건의 정황사실을 보며 판단한다.

725) Probable Cause(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경찰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과 전체적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경우 체포의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합할 수 있다.

726) 김기현·김면기·강성용, 수사단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7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⁷²⁷⁾ 이러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⁷²⁸⁾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보조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경찰이 수사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검찰은 그 다음에 공소유지를 필요한 부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⁷²⁹⁾하거나 불송치 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⁷³⁰⁾을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여기에 더해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³¹⁾

이러한 요구에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⁷³²⁾

불송치 통보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⁷³³⁾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⁴⁾

이러한 복잡다기한 법률과 그 내용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새로운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

사. 경찰과 검사의 수사권 분장의 불명확성에서 나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

727)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728)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729) 「형사소송법」 제197조

73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731)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732)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5항

733)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1항

734) 「형사소송법」 제245조7 제2항

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³⁵⁾

앞서 말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⁷³⁶⁾ 문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다시 경찰로 내려가게 되어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검찰에 물어보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⁷³⁷⁾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소를 한 피해자도 수사의 결과를 알 수 없고, 피의자 역시 수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소인의 이의신청 혹은 검찰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보다 투명한 수사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필요한 재량 편익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를 행정작용으로 본다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초래되고 있는 국민의 불편은 수사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성급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를 분리할 만큼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작용으로서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

73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73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737)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검·경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체가 마련되었다.

므로 소추와 연계되지 않는 수사는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기소 혹은 불기소로 결과가 나왔을 때 향후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수사절차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한 단행법인 수사절차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⁷³⁸⁾

이러한 이유에서 수사절차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작용을 행정 작용으로 보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량권을 확대하는 규정을 쉽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향에서 수사절차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결과물인 수사절차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2절 | 수사절차법(안) 도출 : 2단계

제1편 통칙

제1장 수사의 원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며 각 수사기관의 효율적 협력관계와 수사에 있어 효율성이 적법절차 원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⁷³⁹⁾

738) 다만 이러한 단행법을 국가가 제정하는 '수사절차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잡다기한 사회의 현상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대응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으로서 '수사준칙'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739) 푸른색은 경찰청 의견 반영

제2조(수사의 기본 원칙)

- ①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⑤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검사의 수사)

-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⁷⁴⁰⁾
- ② 검사는 제8조 제6항, 제10조 제2항,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⁷⁴¹⁾

제6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7조(보완수사요구)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8조(시정조치요구 등)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

740) 해당 부분 조항에 대해서 경찰측 입장은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검찰청법의 직접수사범위를 수사절차법에 그대로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검찰측 입장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따르자는 입장임

741) 이창현 교수 의견 반영

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수사의 경합)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편 수사

제1장 입건 전 조사

제11조(입건 전 조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참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입건전 조사의 처리)

- ①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 2. 입건전조사 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⁷⁴²⁾

742)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 다. 단순한 품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 공소권없음
 -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명령이 확정된 경우
 -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라. 사면이 있는 경우
 -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불입건 결정 통지)

- ① 사법경찰관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직무질문)743)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

743) 본 조항에 대하여 경찰측 입장은 일반적으로 직무질문(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써의 기능도 있지만 전형적인 경찰의 행정작용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상의 직무질문의 경우에는 입의수사의 일환으로 해석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해당 조문에 대해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힘

되는 사람

-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5조(변사자 검시)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17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18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조(고소의 방식)

-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5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6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7조(고소의 취소)

- ① 고소의 취소의 방식은 제23조를 준용한다.
- ②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9조(고발의 제한)

제22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30조(고발의 방식 등)

고발의 방식 및 취소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조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임의수사

제33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및 강제수사 유의사항)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④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⁷⁴⁴⁾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34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744)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반영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⁷⁴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피의자신문 사항 및 방법)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8(변호인의 참여 등)⁷⁴⁶⁾

74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까지 일정시간 신문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어, 변호인 선임 기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746)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 2008.1.7, 법무부령 625호)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에서 변호인의 참여 제한과 관련하여, 제9조의 2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i)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ii)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iii)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v)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함)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참여권 제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주요한 내용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방해와 수사기밀누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피의자신문방해에 대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1호, 2호) i)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ii)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는 개정 형사소송법상(제243조의2 제3항)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피의자 신문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극적인 피의자 신문방해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되는 제9조의2 제4항 3호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즉 변호인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신문이 부당하지 않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일 것이고 결국 어떤 신문이 부당한 신문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신문방법이 부당한 신문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법절차 준수에 의한 실제진실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실무나 판례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있어서의 부당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변호인의 참여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대구 한의대 조성재 교수 의견)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41조(수사과정의 기록)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심야조사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휴식시간 부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참고인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47조(증인신문청구)

-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참고인의 증인신문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단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청구인 경우에는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⁷⁴⁷⁾

제48조(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수사준칙 규정)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수사기관의 신문 또는 피해자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747) 현 수사에 있어서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도 증인신문청구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⁷⁴⁸⁾

제50조(감정·통역·번역 위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51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①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2조(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① 제53조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48) 이 조항에 대해 실질적인 피의자 조사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참고인 파트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 관련 조문에 편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4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53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⁷⁴⁹⁾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

7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제200조의2 제1항).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포를 전제로 하는 체포전치주의의 입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체포의 요건만 구비된 경우에는 먼저 체포를 하여 그 이후에 구속을 행하는 방법과 구속요건에 해당함이 명확하여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을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는 때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어서, 그 죄란 구체적이고 특정한 범죄를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며,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결합을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체포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이들을 체포사유로 하고 있다고 보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수사초기에 있어서 신병확보수단인 체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체포사유를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 입법론 보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체포제도는 단기간의 신병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체포제도의 완화된 운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출석불응과 출석불응의 우려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조성제 교수)

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체포영장의 집행)

- ① 체포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55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촉탁)

-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56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절차)

- ①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권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⁷⁵⁰⁾

제59조(체포영장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60조(체포영장 집행 후의 통지)

- ①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50) 현 형사소송법에서는 변명할 기회만 부여하고 있으나 수사준칙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고지를 추가함

- ⑥ 체포된 피의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체포 후의 조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62조(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63조(긴급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64조(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긴급체포 후의 조치)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긴급체포 후의 통지)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7조(긴급체포 후의 절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6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긴급체

포하지 못한다.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현행범인의 체포)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 현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⁷⁵¹⁾

제69조(수사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751)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긴급체포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이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범인체포에 있어서는 긴급체포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 또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설로 ㉠ 구속사유필요설은 현행범인체포에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사안의 긴급성 때문이기에 긴급체포와 같이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이고, ㉡ 구속사유불요설은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체포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구속사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 절충설은 현행범인체포는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신원이 불분명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수사 확보를 위해 혐의자의 행동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제도이기에 도망의 염려는 필요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법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구속사유필요설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판례는 구속사유필요설의 입장이지만 다수 학설은 구속사유불요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제70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수사기관 체포 및 인도 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72조(현행범인 체포 후 조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73조(구속의 사유)⁷⁵²⁾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752) 구속의 사유도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기본 구속 요건으로 하지는 의견도 있음

제74조(구속 영장 청구와 발부)

- ① 제73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①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구속전피의자 심문)

- ① 제53조·제62조·제6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77조(구속전피의자심문 방법)

-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78조(구속전피의자 심문에 있어 신뢰관계자 동석)

- ① 판사는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구속영장의 집행)

-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0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2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구속과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85조(구속 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2.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구속의 통지)

- ①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진료)

구속된 피의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89조(변호인의 의뢰)

- 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753)

75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과 제209조에 의해서 위 9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91조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학설로 ㉠ 수사기관결정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피의자 체포), 제209조(피의자 구속)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제4판)』, 성균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1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92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93조(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대 출판부, 2015, 218면;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앞의 책, 194면; 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22, 159면; 이창현, 앞의 책, 374면; 임동규, 앞의 책, 221면; 정용석/최창호/이경렬/김한균, 앞의 책, 170면. ⑥ 법원결정서는 위 조문들은 공판절차에서 행해지는 피고인 구속의 관련 조문들을 수사절차에서 행해지는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에 준용하기로 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신양균/조기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2, 179면; 이은모/김정환, 앞의 책, 283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법원에서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의 강제처분에서 준용하는 바랍에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논쟁이 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현재 수사기관결정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9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재구속의 제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제9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⑥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⑪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7조(피의자 보석)⁷⁵⁴⁾

- ①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재판장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 보석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석방을 허가해야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754) 본 조항은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이 재량 보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뒤에 다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피의자에게 허용하지는 것이 연구자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보석 조항을 들어 신설하였음

제98조(피의자 보석의 조건)⁷⁵⁵⁾

법원은 피의자를 보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의자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받아들일 것
10. 그 밖에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피의자 보석 결정시 고려사항)⁷⁵⁶⁾

① 법원은 피의자 보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의자의 전과(前科)·성격·환경 및 자산

755)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뒤에 다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피의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보석 조항을 들어 신설함

756)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뒤에 다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피의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음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 ②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피의자 보석 절차)⁷⁵⁷⁾

- ①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의자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보증금의 몰수)⁷⁵⁸⁾

- ① 법원은 보석된 자가 102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아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02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①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

757)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뒤에 다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피의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음

758)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뒤에 다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피의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음

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103조(구속의 집행정지)

- ①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04조(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청구 및 신청)

-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⁷⁵⁹⁾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

759)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

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05조(영장의 방식)

-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106조(영장의 집행)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제107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고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8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09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10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1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2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15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16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17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⁷⁶⁰⁾

760) 관련성 존부, 구체적 압수방법, 절차에 대해 최근 관련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계속 법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 법리를 조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최영락 변호사)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18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19조(우체물의 압수)

- ①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사진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2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수색)

- 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25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6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압수 등의 조서)

- ①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제128조(수색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인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의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 환부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환부불능과 공고)

-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4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청구)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전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①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편 수사의 종결

제1장 통칙

제136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제137조(검사의 결정)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1. 공소제기
 -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 3. 기소중지
 - 4. 참고인중지
 - 5. 보완수사요구
 - 6. 공소보류
 - 7. 이송
 - 8. 소년보호사건 송치
 - 9. 가정보호사건 송치
 -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8조(수사 결과의 통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4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1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9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① 제14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1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46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1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

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제140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혐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14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1조(사건기록의 등본)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142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143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4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① 제146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5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⁷⁶¹⁾

761) 위 조항을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 현재 해당 수사준칙에 대해 책임수사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제1항에서 '검사는 제151조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인 송치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2022년 5월 9일에 공포되어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 되고(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② 검사는 사건송치요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제 10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6항)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제196조 제1항)는 내용이 신설되어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도 수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건송치요구 등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차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이창현 교수)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형사소송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6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4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제147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148조(재수사요청 등)

- ① 검사는 제151조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149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① 검사는 제15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51조 제2호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51조 제2호에 따라 송부 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51조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0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① 사법경찰관은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1조 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1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제5편 수사 특례**제152조(신분위장 수사)**

- ① 수사기관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신분위장 수사 절차 등)

- ①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검찰은 대검찰청,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4조(긴급 신분위장수사)

- ① 수사기관은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1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55조(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56조(신분위장 수사 비밀준수 의무)

- ①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면책)

- ① 수사기관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

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김기현, 김면기, 강성용, 수사단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연구, 치안연구소, 2018.
- 김현숙,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 연구실, 2011.
- 이창현, 형사소송법(제8판), 정독, 2022.
- 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22.
-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 Spencer, J.R.(2007). "Arrest for Questioning." Cambridge Law Journal, 66(2): 282-284.
- Susskind, R.S.(1993). "Race, Reasonable Articulate Suspicion, and Seizure."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31.
- Terry v. Ohio, 392 US 1(1968), Ybarra v.Illinois, 444 US 85(1979)
- Michigan v. Long, 463 U.S. 1032(1983)
- United States v. Sharpe, 470 U.S. 675, 686(1985)
- Payton v. New York, 445 U.S. 573(1980)
- Ybarra v. Illinois, 444 U.S. 85(1979), Michigan v. Summers, 452 U.S. 692(1981)
- Carroll v. United States, 267 U.S. 132, 149(1925)
- Coolidge v. New Hampshire, 403 U.S. 443(1971)
-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1967)
-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1990)
- Illinois v. McArthur, 531 U.S. 326(2001)
- Payton v. New York, 445 U.S 573(1980)
- Maryland v. Pringle, 540 U.S. 366(2003)
- 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Enactment of Investigation Procedure Act

JEA HYEN SOUNG · JUN HEE JANG · SOO HO KOOK · JANG WOK SHIN ·
CHANG HUN LEE · SUNG JE CHO · YOUNG RAK CHOI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First, there is a position that investigation is, in principle, a judicial action. The power of investigation is the power of the court. However, the prosecution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court. If the investigation is viewe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it is the position that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should be cautious in that discretion can be expanded for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If the investigation is viewe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it is the position that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should be cautious in that discretion can be expanded for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Second, investigation procedures must be viewed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prosecution and trial. According to this, investigation is a necessary action to maintain prosecution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annot be separated. Therefore, enactment of a law that only regulates investigative procedures is problematic.

Thir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use inconvenience to citizens. Citizens' inconvenience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is caused by hasty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should be carefully judged.

Fourth, the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need revision. This position is neutral, saying that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requires careful judgment, but the provisions applicable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need to be revised.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due to a number of applicable regulations.

Fifth, the discretionary power of police investigations should be wider than it is now.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It is the opinion that the most powerful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needed.

Sixth, the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Due to the complex laws and their contents, the party to the case who is the victim often does not know where their case is located, so a new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needed.

In conclusion, the investigation can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vented. For this, due process must be guaranteed. If the investigation is viewe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discretion can be expanded for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e current inconvenience of the public is caused by the hasty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adjust the investigative power. An investigation is premised on prosecution, and an investigation that is not linked to prosecution is unthinkable. It is also a very reasonable view that the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should be carefully judged.

However, enact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ct is necessa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itizens to ensure where and how their investigation is being conducted and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law should not be enact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expanding discretionary power. It should be enact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lives and safety of all citizens and prevents abuse of investigative rights.

연구총서 22-A-02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발행 | 2022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I S B N | 979-11-91565-51-5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